

---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2023. 12.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추진근거 및 평가체계 .....	2
III. 평가결과 .....	3
IV.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10
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	10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	18
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	30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	40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	45
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	52
7.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관리 강화 .....	54
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	60
9. 공용차량 관리 강화 .....	66
10.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72
11.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	79
12.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	84
13.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	89
14.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	97
15.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	104
16.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	107
17. 구립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	109
18.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	117
19.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121
20.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	128
21. 우수기업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	131
22. 지역축제 운영·지원 적정성 제고 .....	134
V. 조치사항 .....	139

# I. 추진배경

## □ 지방자치단체 기능·권한의 확대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도 증대

- 기능·권한 확대에 따른 적절한 통제장치 미흡으로 자치법규 속 부패 요인의 관행화·장기화로 인해 지방경제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
-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 분야의 부패 발생의 방지에 한계

- 지자체장·지방의원 이해충돌 심각...출장비 부당수령 49억 환수도('22.06.22, 국제신문)
- 지방의원, 지자체와 부적절 수의계약 속출...징계 '미미'('22.06.23, 울산제일일보)
- 과태료 감면해 돈 챙기고 조카 채용 청탁, 지자체·지방의회 비리 적발('22.04.28, 파이낸셜뉴스)
- '비리의 뒷'된 지자체장 부동산 인·허가권('21.10.13, 이데일리)
- 의장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없이 ◎◎시의회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22.04.20, 감사원)

## □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 부패행위에 대한 근원적 진단·처방 요구

- 법령이나 공공기관 사규 평가에 비해 단편적인 수준에서 그치던 자치법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영향평가 필요
- 상위법령 기준 초과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규제 개선도 필요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

- '22.6.21, 국무회의 시 대통령 말씀 -

## □ 자치법규에 숨겨진 부패·불공정·규제를 유발하는 규정 개선 필요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하는 등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확립
-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성 규정으로 인해 불공정·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의 권익침해로 작용하는 부패요인 적극 발굴·개선 추진

## II. 추진근거 및 평가체계

###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해 단체장에게 개선권고 가능

\* 적용기관 :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 □ 평가방법

- (기초조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조사해 평가 효율성 제고
  - 지자체별 실태,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방의회 지적사항, 지역언론 보도이슈, 부패성 민원사례 등 각종 자료수집·검토
  - ※ 기존 개선권고 사례(79개 기초지자체 및 17개 광역지자체)에 따라 사전점검 후 점검 결과 반영 여부 검토
- (세부평가) 12개 평가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평가 실시
  - 지방의회, 재정, 민간위탁 등 지자체의 부패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중심으로 우선 분석·검토하고, 필요시 기관 방문 점검 병행
  - 지역 부패·비리, 불공정을 유발하는 규제를 현안과제로 발굴·평가하고 관련 지자체의 유사 자치법규 일괄 개선
  - 점검시 발굴된 특정 지자체의 개선안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여 공유하고 권고안에 적극 반영

### Ⅲ. 평가 결과

#### 1. 평가결과 요약

##### □ 평가대상

- 특별시·광역시 소속 61개 자치구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 자치법규 현황 〉

(단위 : 개)

기관명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b>계</b>	<b>32,226</b>	<b>22,052</b>	<b>5,833</b>	<b>3,107</b>	<b>1,234</b>
광주 광산구	680	456	104	85	35
광주 남구	713	485	105	84	39
광주 동구	634	430	104	72	28
광주 북구	682	461	112	71	38
광주 서구	677	434	103	90	50
대구 남구	497	311	80	63	43
대구 동구	479	323	87	39	30
대구 북구	518	342	88	53	35
대구 서구	482	297	84	54	47
대구 수성구	609	418	91	57	43
대구 중구	488	289	86	70	43
대전 대덕구	543	380	89	62	12
대전 동구	567	399	100	57	11
대전 서구	580	418	87	69	6
대전 유성구	563	409	81	64	9
대전 중구	472	319	84	61	8
부산 강서구	469	298	82	65	24
부산 금정구	439	283	79	55	22
부산 남구	564	365	93	82	24
부산 동구	500	319	85	59	37
부산 동래구	489	328	84	55	22
부산 북구	502	339	83	57	23
부산 사상구	439	282	80	50	27
부산 사하구	520	352	88	61	19
부산 서구	480	333	74	49	24
부산 수영구	441	287	78	53	23
부산 연제구	510	337	82	62	29
부산 영도구	493	340	82	47	24
부산 중구	489	341	74	54	20
부산 해운대구	545	360	88	71	26
서울 강북구	534	378	109	30	17
서울 강서구	534	378	110	40	6

기관명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서울 관악구	503	351	103	42	7
서울 광진구	501	350	96	46	9
서울 구로구	554	397	108	39	10
서울 금천구	530	390	96	31	13
서울 노원구	622	455	122	40	5
서울 동대문구	563	397	105	45	16
서울 동작구	563	404	120	27	12
서울 마포구	554	398	106	30	20
서울 서대문구	541	368	120	47	6
서울 서초구	487	350	106	22	9
서울 성동구	534	384	101	40	9
서울 성북구	513	360	100	45	8
서울 송파구	474	313	115	32	14
서울 양천구	562	421	93	44	4
서울 영등포구	553	397	111	23	22
서울 용산구	488	325	112	43	8
서울 은평구	517	352	97	38	30
서울 종로구	456	307	112	22	15
서울 중구	532	372	108	37	15
서울 중랑구	498	340	105	46	7
울산 남구	502	339	90	61	12
울산 중구	510	362	87	50	11
인천 계양구	529	364	103	43	19
인천 남동구	568	400	91	56	21
인천 동구	472	320	91	48	13
인천 미추홀구	541	362	107	45	27
인천 부평구	471	318	95	45	13
인천 연수구	494	339	88	42	25
인천 중구	462	326	89	37	10

## □ 평가결과

- 다양한 지방행정 분야에서 2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총 1,763건의 개선권고 도출
  -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및 출장결과 검증 미흡, 부적격자 포상취소 규정 불비, 여비 지급기준 미비 등 기관 운영 불투명성 개선
  - 퇴직공무원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보조금·운영비 지원, 구립예술단 단원 사적 채용 우려 등 각종 사업 운영과정의 불공정 해소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형	문제점	개선방안
지 방 의 회	<p><b>1.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통제 미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으로만 구성된 의회운영위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심의 배제 미흡 등으로 용역발주 특혜, 부당한 사익추구 등 부패 발생 소지</li> <li>○ 활동내역, 연구활동비 사용현황 등 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여 사적 모임으로 변질될 우려</li> <li>○ 연구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결과물 품질 및 활용도 저해</li> </ul>	<p><b>1.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마련</li> <li>○ 연구활동비 목적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규정 신설, 재량규정인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li> <li>○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및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li> </ul> <p>* 예산사용내역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p>
	<p><b>2. 지방의원 비위행위 제재 미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규정 부재 또는 징계대상 비위행위를 검직 위반 등 일부만 규정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도 미흡해 자정기능 실효성 부족</li> <li>○ 윤리심사자문위 규정 부재 또는 심의시 공무원 참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미흡 등으로 심의 공정성·신뢰성 저해</li> </ul>	<p><b>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규정 마련 또는 징계대상 위반행위 확대* 및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li> </ul> <p>*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조례 위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심사자문위 규정 마련 또는 심의에 공무원 참여 금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보완</li> </ul>
	<p><b>3. 지방의원 국외출장 타당성 등 검증 미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 규정 및 세부 심사기준 부존재, 출장제한 미흡 등 외유성 출장 사전통제 취약</li> <li>○ 위원 구성기준, 민간위원 추천 규정, 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미흡, 회의록 공개 및 의결정족수 미비 등 사전심사위 구성·운영 공정성 미비</li> <li>○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 미비로 재정 누수 방지</li> </ul>	<p><b>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 규정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 출장제한 규정 보완</li> <li>○ 심사위원 수 확대, 민간위원 위촉방식 변경(외부추천), 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명시, 회의록 공개 및 의결정족수 확대</li> <li>○ 부당 지출된 출장경비 환수 의무화</li> </ul>
	<p><b>4. 지방의원 출장비 지급기준 미비</b></p>	<p><b>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b></p>

<b>지 방 의 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규정이 없어 출장비 지급 타당성·적정성 확보 곤란</li> <li>○ 근무지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 지급으로 출장비 과다지출(일비 지급 원칙)</li> <li>○ 운임비를 정액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해 허위출장 여부 확인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 국내여비 지급 규정 마련</li> <li>○ 근무지내 출장 시 식비·교통비 지급 폐지</li> <li>○ 운임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li> </ul>
	<p><b>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관리 부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어긋나는 집행기준 운영, 사적사용 제한기준 및 부당 사용 제재 미흡 등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li> <li>○ 업무추진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시스템 미비</li> </ul>	<p><b>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정비, 사적사용 제한기준 보완, 부당 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li> <li>○ 의원대상 교육 및 사용내역 주기적 점검 의무화</li> </ul>
<b>기 관 운 영</b>	<p><b>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특혜성 장기 연임 가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임기 제한이나 재위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기득권 부여</li> </ul>	<p><b>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li> </ul>
	<p><b>7.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관리 부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위를 내부직원만으로 구성해 심사 공정성 확보 불가</li> <li>○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여부만 확인하도록 해 계획 대비 적절성, 충실성 등 검토 미흡으로 부실화 초래</li> <li>○ 부당 지출 경비 환수규정 미비</li> </ul>	<p><b>7.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관리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출장 사전심사위 구성 시 외부 위원 참여 의무화</li> <li>○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외에 보고서 적절성·충실성 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근거 마련</li> <li>○ 부당 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li> </ul>
	<p><b>8. 지방공무원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비 정산규정 미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 축소(5배→2배), 출장비 정액지급 등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 수령 야기</li> </ul>	<p><b>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비 사후정산 명시, 부정수령 가산·징수 범위 확대(2배→5배) 및 운임·숙박비 지급방식 변경(정액→실비)</li> </ul>
	<p><b>9. 공용차량 편법 운영 소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차량 정수관리 불분명, 정수 및 운영 현황 공개 미흡, 승용차간 차종(용도) 변경 허용 등 행정편의적 차량 관리</li> </ul>	<p><b>9. 공용차량 관리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차량을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시 및 정수·운영 현황 홈페이지 공개, 승용차간 차종(용도) 변경 제한</li> </ul>

**10.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객관성·공정성 미흡**

- 실무와 무관한 관리자급을 포상대상으로 규정
- 공적심사위 규정 부재 또는 심사위원을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여 포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미흡
- 부정수령 시 환수규정 부재, 불공정한 이자가산 규정\*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 및 행정신뢰 저하

\* 행정착오 환수 시 포상받은 자가 이자 부담

**11. 부적격자 포상 방지 미흡**

-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 및 성범죄·음주운전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제한 규정 부재 등으로 포상자 선정 공정성 미흡
- 거짓·부정한 방법 등 부적격자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포상 영예성 훼손

**12.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 미비**

- 연구용역심의위 구성·운영 시 외부위원 참여 미보장, 위촉위원 장기연임,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미흡 등 심의 공정성·훼손
- 연구부정행위 등 용역평가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재재가 없어 용역 부실화 우려

**13. 금고 지정·운영 공정성 미비**

- 금고지정심의위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미만 구성, 이해관계자 심의배제 규정 부실 등 심의위 구성·운영 공정성·객관성 미흡
- 금고지정 절차 중 의무사항인 금고지정 공고 통지 및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재량으로 규정하여 선별적 정보제공 등 특혜 발생 소지

**10.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관리자급(5급, 과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 공적심사위 규정 마련 또는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명시
- 부적격자 포상금 수령 시 환수 및 이자가산 규정 마련,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산 규정 삭제

**11.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 '특별한 경우' 등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기준 개선 및 부적격자 포상 제한 규정 마련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상취소 절차 마련 및 포상취소가 재량인 경우 당연취소로 개선

**12.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 외부위원 참여 보장, 위촉위원 연임제한 명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 용역평가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 불이익 부과 등 제재 규정 마련

**13.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및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
- 금고지정에 관한 공고 통지 및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의무적 절차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업비* 공개 미흡으로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저해</li> <li>*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입찰 시 지자체에 출연 또는 지원하기로 한 현금</li> </ul> <p><b>14.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기본조례 미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배제 미흡, 직무상 비위자 해촉 및 연임 제한 부재 등 기본조례로서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업비 공개 규정 마련 및 세입 예산 편성내역·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공개 규정 보완</li> </ul> <p><b>14.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공정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강화,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마련, 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li> </ul>
<b>사 업 추 진</b>	<p><b>15. 퇴직자단체에 과도한 보조금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외에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을 추가 규정하여 청탁에 의한 특혜 우려</li> <li>○ 재정지원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여 법률 위반 및 재정 누수 발생</li> </ul> <p><b>16.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소극적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소극행정 유발</li> </ul> <p><b>17. 구립예술단 채용·운영에 과도한 재량 부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휘자 등 직책단원·일반단원 채용 규정 부재 또는 추천으로 채용하고 공개모집 여부가 불분명해 재량남용 및 사적 채용 우려</li> <li>○ 예술단 운영위 위원 및 전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미흡</li> <li>○ 전형위원 규정이 없거나 지휘자·담당 부서장 등이 독단적으로 결정</li> </ul> <p><b>18.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자 선정 공정성 미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복수인 경우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부재로 특혜 발생 소지</li> </ul>	<p><b>15.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외 조례로 추가 규정한 지원대상 사업 삭제</li> <li>○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li> </ul> <p><b>16.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 기간 종료일까지' 등으로 확대</li> </ul> <p><b>17. 구립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은 공개전형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마련 또는 보완</li> <li>○ 운영위 위원 및 전형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li> <li>○ 전형위원회에 관한 규정 마련</li> </ul> <p><b>18.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복수인 경우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마련</li> </ul>

**19.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부실**

- 수탁자선정위 내부위원 위주 구성 및 위원자격요건 불명확해 심의과정의 공정성 미흡
- 위탁 시설·예산 등 목적외 사용 방지 미흡, 감사 부실 등 수탁기관 책임성 확보 미약

**20. 기업 및 투자유치 심의 공정성 미흡**

- 투자유치위 위원 해촉 및 연임제한 규정 부재,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로 공정성 저해

**21. 우수기업인 선정 공정성 미흡**

-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우수기업인 선정기준을 규정하여 재량 남용 우려

**22. 무분별한 지역축제 난립**

- 축제위원회 부적격자 배제 및 연임제한 부재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로 구성·운영 공정성 미흡
-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어 선심성 축제 등 난립 우려

**19.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및 구체적 자격요건 명시
- 위탁 시설·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등 수탁기관 의무사항 규정 및 주기적 감사 의무화

**20.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의 공정성 제고**

- 부적격 위원 해촉 기준 마련, 위촉 위원 임기제한 명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21. 우수기업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 불명확한 우수기업인 선정기준 삭제 또는 구체화

**22. 지역축제 운영지원 적정성 제고**

- 부적격위원 해촉 규정 및 위촉위원 연임제한 마련,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축제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규정 마련

## IV.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

평가대상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등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등록)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심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7.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8조 (연구활동비등의 집행)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출 규정 없음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정누수 가능성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 현황

- 각 지자체는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 행안부는 '20년에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지원을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고, 각 지방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지원
  - 연구단체·모임의 등록·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과제 심의, 연구활동비 지급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

## □ 문제점

- ① 정책연구용역은 일반 연구활동 대비 예산 규모가 크고,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에 부패 개입 여지가 많아 용역과제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요구됨에도
  - 광주 남구의회 등은 외부위원 없이 의원으로만 구성된 운영위에서 심의하거나 외부전문가 검토 등을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어 용역 발주 특혜 등 부패 발생 가능성 존재
  - 부산 서구의회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의회 운영기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
  - 서울 종로구의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포함해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없이 의장이 정하도록 해 연구단체 활동의 적정성·타당성 확보 수단 부재
- ② 연구활동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연구계획·정책연구용역 승인, 연구비 지급·조정, 결과 등을 심의하므로 공정성이 중요하나
  - 부산 서구의회를 제외한 구의회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심의위원의 사익추구 통제 불능

③ 연구활동비는 정책연구용역 수행,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연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용 시 환수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 대구 북구의회 등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고,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재정 누수 방지 우려

④ 연구활동 책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 및 예산사용내역을 제출받고 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함에도

- 대구 남구의회 등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중 일부만 제출하도록 해 실효성 미흡

- 서울 동대문구의회 등은 연구활동 결과물 공개 규정이 없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중 일부만 공개하는 등 성과물의 환류 및 활용도 제고 미흡

[표 1]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규정 현황

( × 규정 없음, △ 규정 미흡, ○ 규정 있음)

구분	① 정책연구용역 심의기구				② 제척·회피	③ 목적외 사용 금지/환수	④ 연구활동 결과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구성				보고제출	공개
			내부	외부				
광주 광산구	의회운영위	해당 적격여부, 연구주제 적합 여부, 경비의 지원, 사전 지원 및 증감여부, 활동 및 운영상황 등	운영위	△	△	○	△	×
광주 남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 연구결과 보고서의 승인 등	운영위	×	×	○	△	△
광주 동구	의회운영위	연구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주제 조정, 연구보고서 채택,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회수,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등	운영위	×	×	○	△	×
광주 북구	의회운영위	연구회 등록, 연구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지원 등	운영위	-	-	-	-	-
	용역심사위	연구회 위탁 용역 필요성, 적실성, 과업내용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활용 가능성, 활용계획 등	-	○	△	○	△	△
광주 서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변경,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대구 남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등	운영위	×	×	○	△	×
대구 동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연구활동비, 연구용역비 지원, 연구용역 승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구분	① 정책연구용역 심의기구				② 제척·회피	③ 목적외 사용 금지/환수	④ 연구활동 결과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구성				보고제출	공개
			내부	외부				
대구 북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활동사항 활동비 등 책정 지원 등	운영위	×	×	△	△	×
대구 서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등	운영위	×	×	△	△	×
대구 수성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계획 승인 결과보고서 승인 연구활동비·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운영위	×	×	△	△	×
대구 중구	의회운영위 (행정위)	연구활동 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등	운영(행정)위	×	×	○	△	×
대전 대덕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승인 변경 승인 연구용역 승인 및 결과 평가, 연구활동비 지원 등	운영위	×	×	○	결과보고서 용역결과서 사용내역서	△
대전 동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배분 연구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대전 서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변경, 연구활동비·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비용 정산 ※ 정책용역과제 심의 전 전문기관에 사전검토 가능	운영위	△	×	○	△	×
대전 유성구	심의위	연구활동계획 승인·변경 승인 연구용역 승인 연구활동비 연구용역비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	×	○	△	△
대전 중구	심의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의원정책개발비 지급 결정 회수 등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의장추천	×	×	△	△	×
부산 강서구	×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 없음 - 의장에게 신청서 제출,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함	×	×	×	×	△	×
부산 금정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경비 지원 연구활동계획서 변경사항 연구단체 지원비용 금액과 지원비용 변경 등	운영위	×	×	×	△	×
부산 남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계획서 경비 지원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사의원정책개발비 계획서 변경사항 연구단체 지원비용 등	운영위	×	×	○	△	-
부산 동구	의회운영위 (총무위)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활동경비 지원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사항 연구단체의 지원비용 금액 지원비용 변경	운영(총무)위	×	×	△	△	△
부산 동래구	×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 없음 - 의장에게 신청서 제출,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함	×	×	×	△	△	△
부산 북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변경) 결정 및 환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부산 사상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활동경비 지원,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 사항과 연구단체의 지원비용 금액과 지원비용 변경	운영위	×	×	○	△	△
부산 사하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계획 및 결과보고서의 승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운영위	×	×	△	△	×
부산 서구	심의위	연구 활동 계획·변경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의원정책개발비 지원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연구 사례집 발간 등	심의위 운영(기획)위 대행 가능	○ ×	○	○	△	-
부산 수영구	의회운영위 (총무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 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지원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사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연구결과보고서 승인	운영총무위	×	×	△	△	×
부산 연제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경비·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사항 연구단체 지원비용 금액 지원비용 변경	운영위	×	×	×	△	×
부산 영도구	의회운영위 (행정기획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 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급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결과보고서 승인 등	행정기획위	×	×	△	△	×
부산 중구	운영자치위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등	운영자치위	×	×	△	△	×
부산 해운대구	의회운영위 용역심사위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변경) 결정 환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용역과제 적절성,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등	운영위 의원 의회사무국장	- ○	×	△	△	-
서울 강북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변경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의원 정책개발비 책정 지원 연구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강서구	의회운영위	연구단체 조정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비·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집행 회수 등	운영위	×	×	△	△	×
서울 관악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승인 연구용역 승인 연구활동비 연구용역비 지원	운영위	×	×	△	△	△
서울 광진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 연구활동비·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회수,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구로구	의회운영위	연구단체의 조정 활동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등	운영위	×	×	○	△	×

구분	① 정책연구용역 심의기구				② 제척·회피	③ 목적외 사용 금지/환수	④ 연구활동 결과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구성				보고제출	공개
			내부	외부				
서울 금천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배분 회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노원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의원정책 개발비 책정·배분·회수, 연구결과보고서 내용 등	운영위	×	×	○	△	×
서울 용대문구	의회운영위	모임 등록 연구모임 조정 연구모임 활동 연구활동비 책정지원 등	운영위	×	×	△	△	×
서울 동작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계획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지급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등	운영위	×	×	△	△	△
서울 마포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변경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지원 연구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서대문구	심의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배분 회수,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 등	의원3명이내	○	△	△	△	△
서울 서초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승인 변경 의원정책개발비 지급 결정 회수, 연구활동비 책정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성동구	심의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배 분 회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	○	×	△	△	×
서울 성북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배분 연구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송파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 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지원 연구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양천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 연구주제 조정 구활동보고서 채택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회수,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영등포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지원 연구 활동 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용산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회수 등	운영위	×	×	△	△	×
서울 은평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지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운영위	×	×	○	△	×
서울 종로구	×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 없음 -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등록 결정하고 조례 규정 외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	×	×	△	△	×
서울 중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 연구활동비 책정 지원 등	운영위	×	×	△	△	×
서울 중랑구	의회운영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연구 활동비 책정 및 지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등	운영위	×	×	△	△	△
울산 남구	의회운영위	연구활동 계획 주요 변경 승인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연구결과보고서 채택 연구 사례집 발간 등	운영위	×	×	○	△	△
울산 중구	의회운영위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비 책정 지원 연구내용 등	운영위	×	×	△	△	×
인천 계양구	심의위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등	의원	○	△	△	결과보고서 사용내역서 용역성기물	△
인천 남동구	심의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 계획변경 등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배분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	×	△	결과보고서 사용내역서 용역성기물	×
인천 동구	심의위	연구활동 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배분 연구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	△	△	△	×
인천 미추홀구	심의위	연구활동계획(변경) 승인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지원 결과보 고서 승인 등	의원	○	×	△	△	△
인천 부평구	심의위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 연구활동비 의원정책 개발비 책정 배분 연구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	△	△	△	×
인천 연수구	심의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 서 승인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등	의원	○	△	△	△	△
인천 중구	심의위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 연구활동비 정책개발비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	△	○	△	×

## < 언론보도 사례 >

- ◆ **임기말 제8대 ○○시의회 연구활동비 반납 논란(‘22.6.23, 연합뉴스)**
  - 4개 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를 제출했지만, 4개 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를 담은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비용을 반납하지도 않아
  - 연구활동비 논란의 핵심은 8대 시의회의 공식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지만, 앞서 폐회연까지 한 마당에 남은 연구활동비를 집행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
- ◆ **기초의원 연구단체 예산은 ‘쌈짓돈?’(‘22.2.15, B tv)**
  -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책개발이나 입법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설립했는데 단체별로 한 해 수백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효과는 의문
  - ○○의회 연구단체는 4개, 결과보고서도 4장이 전부. ... 지출한 금액은 280여만원, 이중 간담회 비용만 절반이 넘지만 간담회 내용이 무엇인지, 현장방문은 어디로 한 건지 내용이 없음
  - ○○연구회 역시 3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연구활동비로만 180만원을 썼고, 자세한 내용은 역시 없음
- ◆ **‘정책개발비 집행 기초의회 4곳’ 정책연구는 뒷전?(‘23.1.10, KBS 대구)**
  - 경북의 기초의회를 확인했더니 정책개발비를 활용하는 곳이 고작 4곳에 불과

## □ 개선방안

- ① 연구활동 지원,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심의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 개선(광주 남구의회 등 45개 구의회)
  -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부산 서구의회)
  -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위원 참여 규정 마련(서울 종로구의회 등 3개 구의회)
- ②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외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광주 남구의회 등 59개 구의회)

- ③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부당 사용 제재를 위해
  -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거나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대구 북구의회 등 33개 구의회)
- ④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집행 투명성·활용도 제고 등이 확보되도록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 보완(대구 남구의회 등 58개 구의회)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 개선(서울 동대문구의회 등 57개 구의회)

## [타 기관 우수사례 및 유사 입법례]

###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단체 구성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구주제의 적합 여부 및 연구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

**제12조(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구단체활동중간보고서는 6월 30일까지,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까지 각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새로이 개시되는 연도에는 연구단체활동중간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책연구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그 밖에 입법활동, 연구활동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평가대상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회의규칙 등

###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한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부산광역시 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부산광역시 남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 권고 거부

[별표2] 징계 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검직신고 위반	○ 검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검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 규정 없음

###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피·회피 없음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현황**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자치법규 위반행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 윤리특별위는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고, 징계·윤리심사자문위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위임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회의 규칙 등에 지방의원 의무사항·윤리심사·징계·윤리심사자문위에 관한 사항 규정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문제점

① 지방의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 등에 관한 조례에 징계 규정이 없어 징계 실효성 확보가 곤란

- 대구 동구의회 등은 윤리심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불명확

- 부산 남구의회 등은 겸직신고 위반 등 일부만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는 징계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윤리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 회부가 불분명

②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이 없거나 미흡해 위반한 행위 및 그 정도에 따른 징계양정의 적정성·일관성 확보가 곤란

- 서울 강서구의회 등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이 전혀 없거나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는 징계기준을 두지 않아 부실 징계 또는 정치논리로 좌우될 우려

[표 2] 지방의회의원 징계 규정 현황

구분	관련 규정	① 징계대상 비위(위반)행위	② 징계기준
광주 광산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5개 비위유형
광주 남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	겸직신고 위반 등 7개 비위유형
광주 동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	겸직신고 위반 등 8개 비위유형
광주 북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7개 비위유형
광주 서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	겸직신고 위반 등 7개 비위유형
대구 남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대구 동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b>징계규정 없음</b>	<b>없음</b>
대구 북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2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대구 서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대구 수성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대구 중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대전 대덕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대전 동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대전 서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8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대전 유성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대전 중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부산 강서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6개 비위유형

구분	관련 규정	① 징계대상 비위(위반)행위	② 징계기준
부산 금정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b>징계규정 없음</b>	<b>없음</b>
부산 남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부산 동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부산 동래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	<b>징계규정 없음</b>	<b>없음</b>
부산 북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7개 비위유형
부산 사상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부산 사하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부산 서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b>없음</b>
부산 수영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b>징계규정 없음</b>	<b>없음</b>
부산 연제구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제8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5개 비위유형
부산 영도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b>징계규정 없음</b>	<b>없음</b>
부산 중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6개 비위유형
부산 해운대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6개 비위유형
서울 강북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서울 강서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	<b>징계규정 없음</b>	<b>없음</b>
서울 관악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6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서울 광진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서울 구로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위반	<b>없음</b>
서울 금천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b>징계규정 없음</b>	<b>없음</b>
서울 노원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b>징계규정 없음</b>	<b>없음</b>
서울 동대문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서울 동작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3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b>미흡</b>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서울 마포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	<b>징계규정 없음</b>	<b>없음</b>

구분	관련 규정	① 징계대상 비위(위반)행위	② 징계기준
서울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청렴 의무·수익계약제한 등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9개 비위유형
서울 서초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미흡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서울 성동구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제4조*	징계규정 없음	없음
서울 성북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14조*	징계규정 없음	없음
서울 송파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4조*	징계규정 없음	없음
서울 양천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17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미흡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서울 영등포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14조*	징계규정 없음	없음
서울 용산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4조*	징계규정 없음	없음
서울 은평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미흡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서울 종로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32조	청렴의무·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없음
서울 중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4조*	징계규정 없음	없음
서울 중랑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4조*	징계규정 없음	없음
울산 남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4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윤리심사 대상)	미흡 (겸직신고 위반행위만 있음)
울산 중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제10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미흡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인천 계양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제6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5개 비위유형
인천 남동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제10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미흡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인천 동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제10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미흡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인천 미추홀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미흡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인천 부평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미흡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인천 연수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품위유지 위반 등 5개 비위유형
인천 중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제11조	겸직금지·겸직신고·수익계약제한 등 위반(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없음)	미흡 (윤리심사 대상유형 없음)

\* 윤리심사 규정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법에서 정한 의무적 절차이고, 결과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 ③ 서울 구로구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관한 규정 부존재
- ④ 대전 중구의회, 서울 강서구의회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아 장기위축으로 인한 유착 등 부작용 우려
  - 서울시 중구의회는 연임 규정이 윤리특별위 및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규칙과 회의규칙에 다르게 규정되어 혼란을 야기
- ⑤ 부산 서구의회 등은 임기 중이라도 부적격 위원은 위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촉 규정이 없어 위원의 적격성 확보가 미흡
- ⑥ 대전 유성구의회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 의회가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흡해 자문 공정성이 부족
- ⑦ 서울 관악구·영등포구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시 민간위원 위축이 어려운 경우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 당원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중립성 훼손

※ 서울시 관악구의회·영등포구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 구성·운영 규정 준용

**[표 3]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현황**

(× : 규정 없음, △ 규정 미흡)

구분	③ 관련 규정	④ 연임 제한	⑤ 해촉	⑥ 이해충돌방지			⑦ 규정
				제척	기피	회피	
광주 광산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14조제15조		×		×	×	
광주 남구	회의규칙 제52조의2		×		×	×	
광주 동구	회의규칙 제84조		×		×	×	
광주 북구	회의규칙 제84조		×		×	×	
광주 서구	회의규칙 제86조				×	×	
대구 남구	회의규칙 제52조의2		×		×	×	
대구 동구	회의규칙 제87조		×		×	×	
대구 북구	회의규칙 제82조의2				×	×	

구분	③ 관련 규정	④ 연임 제한	⑤ 해촉	⑥ 이해충돌방지			⑦ 규정
				제척	가피	회피	
대구 서구	회의규칙 제104조		×		×	×	
대구 수성구	회의규칙 제82조의2				×	×	
대구 중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11조				×	×	
대전 대덕구	회의규칙 제60조의2		×		×	×	
대전 동구	회의규칙 제78조		×		×	×	
대전 서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5조		×		×	×	
대전 유성구	회의규칙 제88조·제89조						
대전 중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5조	×	×		×	×	
부산 강서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2조의2		×		×	×	
부산 금정구	회의규칙 제93조의2		×		×		
부산 남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2조의2·제2조의3		×		×		
부산 동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2조의2·제2조의3		×		×		
부산 동래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2조의2		×		×	×	
부산 북구	회의규칙 제96조·제96조의2		×		×		
부산 사상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2조의2·제2조의3		×		×		
부산 사하구	회의규칙 제87조				×	×	
부산 서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3조		×		×	×	
부산 수영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규칙 제10조·제12조		×		×		
부산 연제구	회의규칙 제90조		×		×	×	
부산 영도구	회의규칙 제83조의2		×		×	×	
부산 중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9조·제10조		×		×	×	
부산 해운대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2조의2·제9조		×		×	×	
서울 강북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4조		×		×	×	
서울 강서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9조	×	×		×	×	
서울 관악구	회의규칙 제83조의3		×		×		공인등 예외사항
서울 광진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7조		×		×	×	
서울 구로구	규정 없음	-	-	-	-	-	-
서울 금천구	회의규칙 제90조·제91조				×		
서울 노원구	회의규칙 제77조		×		×	×	
서울 동대문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12조·제13조				×		
서울 동작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12조				×		
서울 마포구	회의규칙 제85조·제86조			△	×	×	

구분	③ 관련 규정	④ 연임 제한	⑤ 해촉	⑥ 이해충돌방지			⑦ 규정
				제척	가피	회피	
서울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84조				×		
서울 서초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10조		×		×	×	
서울 성동구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의2				×	×	
서울 성북구	회의규칙 제69조		×	△	×	×	
서울 송파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3조		×		×	×	
서울 양천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3조·제4조		×	×	×	×	
서울 영등포구	회의규칙 제72조의2		×		×	×	공무원등 이해충돌 예방규정
서울 용산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3조		×		×	×	
서울 은평구	회의규칙 제71조		×		×	×	
서울 종로구	회의규칙 제92조		×		×	×	
서울 중구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규칙 제3조 / 회의규칙 제51조의2	규정상충	×		×	×	
서울 중랑구	회의규칙 제67조		×		×	×	
울산 남구	회의규칙 제91조의2				×	×	
울산 중구	회의규칙 제99조의2		×		×	×	
인천 계양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3조		×		×	×	
인천 남동구	회의규칙 제83조의1				×	×	
인천 동구	회의규칙 제82조		×		×	×	
인천 미추홀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4조		×		×	×	
인천 부평구	회의규칙 제82조의2		×		×	×	
인천 연수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9조		×		×	×	
인천 중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3조·제3조의2				×	×	

## □ 개선방안

### ① 조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조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징계규정 마련 (대구 동구의회 등 16개 구의회)
-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가 징계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지자체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 행위로 추가(부산 남구의회 등 30개 구의회)

② 윤리심사 대상 행위\*별 징계기준 마련 또는 보완(서울 강서구 의회 등 48개 구의회)

\* 각 자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 준수행위

③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회의규칙에 윤리심사 자문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서울 구로구의회)

④ 윤리심사자문위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대전 중구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 연임제한 규정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규칙 정비(서울 중구의회)

※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규칙) 2년, 임기만료시 재 위촉할 수 있음 / (회의규칙) 위촉된 날로부터 2년

⑤ 임기 중이라도 부적격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 마련(부산 서구의회 등 45개 구의회)

⑥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광주 광산구 등 59개 구의회)

⑦ 민간위원 위촉 시 예외적으로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 당원 참여를 허용하도록 한 준용 규정 정비(서울 관악구·영등포구의회)

※ 서울시 관악구·영등포구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 구성·운영 규정 준용

## [타 기관 우수사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 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윤리강령), 제5조(윤리실천규범)

#### [별표 1] 징계기준(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취소</li> <li>- 면허정지</li> </ul> </li> <li>○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 미만 확정판결</li> </ul> </li> <li>○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li> </ul> </li> <li>○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li> <li>○ 성폭력, 성희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li> <li>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li> <li>경고, 공개사과</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ul>
2.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세</li> <li>○ 면탈</li> <li>○ 금품수수</li> <li>○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li> <li>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ul>
3.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거래금지 위반</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ul> </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 허위신고</li> </ul> </li> <li>○ 계약체결 제한 위반</li> <li>○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li> <li>경고, 공개사과</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ul>
4.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li> </ul>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9.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8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0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 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평가대상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출장이어야 하고,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과 관광성 일정은 배제한다.
2.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방문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 출장경위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4.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6.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기준(별표) 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5 이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심사기준, 출장제한, 부당경비 환수, 심사위원 임기·연임제한, 회의록 공개 규정 없음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공개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 현황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행안부)은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 제한,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 < 관계 법령 >

####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행정안전부)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 문제점

① 행안부 표준안은 출장 필요성·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 서울 양천구의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규정이 없고, 서울 동작구·종로구의의회는 구체적 심사기준 결여로 자의적 심사 우려

② 표준안은 지방의회 개회 중,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가 있는 해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서울 양천구·종로구의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이 없고, 부산 사상구의의회는 출장제한 사유 중 일부\*가 누락되어 부적절한 출장 통제에 한계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한 경우

③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위원은 외부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을 2/3 이상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출장 당사자인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나

- 광주 서구의의회 등은 7인 미만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표준안보다 완화

- 서울 동작구·양천구의회는 민간위원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의원 등으로만 구성이 가능
  - 서울 구로구의회 등은 민간위원 외부추천 규정이 없거나 민간위원 중 일부만 추천하도록 해 객관성·공정성 미흡
  - 서울 성동구의회 등은 심사위원 중 출장 당사자인 의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발생 우려
-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대해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를 위해 연임 제한이 필요함에도
- 대구 수성구의회 등은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등 부패가 우려
  - 광주 서구의회 등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 제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연임 가능성 상존
  - 부산 금정구의회는 심사위원 임기가 의장단 임기와 같다고만 정하고,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도 부재
- ⑤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나
- 부산 중구의회, 서울 양천구의회는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완화하여 운영
  - 서울 양천구의회 등은 회의록 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회의 운영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미흡
- ⑥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 경비는 환수 조치해야 하나
- 부산 사상구의회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 환수를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서울 양천구의회는 환수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 가능성

[표 4]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현황

구 분	① 심사 기준	② 출장 제한	③ 심사위원 구성·운영				④ 임기, 연임제한	⑤ 회의 운영		⑥ 출장비 환수
			위원 구성 (7인 이상)	민간위원		의원 제척		의결 정족수 (2/3 이상)	회의록 공개	
				③ 비율 (2/3 이상)	외부 추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7인 이내				연임제한 없음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대구 수성구							규정 없음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연임제한 없음			
대전 서구							연임제한 없음			
대전 유성구							연임제한 없음			
대전 중구							연임제한 없음			
부산 강서구							연임제한 없음			
부산 금정구							의장단 임기와 동일 연임제한 없음			
부산 남구										
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							연임제한 없음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미흡 (임기만료 無)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재량규정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연임제한 없음			
부산 연제구							연임제한 없음			
부산 영도구							연임제한 없음			
부산 중구			7인 이내				연임제한 없음	과반수		
부산 해운대구							규정 없음			
서울 강북구							연임제한 없음			
서울 강서구							연임제한 없음			
서울 관악구					일부 추천		연임제한 없음			
서울 광진구					일부 추천		규정 없음			

구 분	① 심사 기준	② 출장 제한	③ 심사위원 구성·운영				④ 임기, 연임제한	⑤ 회의 운영		⑥ 출장비 환수
			위원 구성 (7인 이상)	민간위원		의원 제척		의결 정족수 (2/3 이상)	회의록 공개	
				③ 비율 (2/3 이상)	외부 추천					
서울 구로구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서울 금천구			5명				연임제한 없음			
서울 노원구							연임제한 없음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세부기준 없음		5명	불명확	일부 추천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서울 마포구							규정 없음			
서울 서대문구					일부 추천					
서울 서초구							규정 없음			
서울 성동구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서울 성북구					규정 없음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심사규정 없음	규정 없음	7명 이내	규정 없음	일부 추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과반수	규정 없음	
서울 영등포구					일부 추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서울 용산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구	세부기준 없음	규정 없음	5명		규정 없음					
서울 중구							규정 없음			
서울 중랑구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울산 남구							연임제한 없음			
울산 중구									규정 없음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연임제한 없음			
인천 부평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연임제한 없음			

**< 언론보도 사례 >**

- ◆ 제 기능 못하는 시의회 해외연수 심사위 ...“제도 개선해야” (‘22.10, KBS)
- ◆ ‘외유성 출장 비판’ 시민단체 대표, “외유 떠난 시의원들 고발” (‘22. 6, 뉴스프리존)

## □ 개선방안

-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서울 양천구의회) 및 세부 심사기준(별표) 마련(서울시 동작구·종로구의회)
- ②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마련(서울 양천구·종로구의회) 및 출장제한 사유 중 누락된 사유 추가(부산 사상구의회)
- ③ 심사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 심사위원을 7인 이상으로 확대 구성(광주 서구의회 등 6개 구의회)
  -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신설(서울 구로구·양천구의회) 및 민간위원 참여 비율이 명확해지도록 인원수 또는 비율 명시(서울 동작구의회)
  - 외부추천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민간위원은 모두 외부추천을 받도록 규정 개선(서울 구로구의회 등 10개 구의회)
  - 심사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해당 심사에서 배제하는 규정 마련(서울 성동구의회 등 7개 구의회)
- ④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도록
  - 위원회 임기와 연임 제한을 규정 마련(대구 수성구의회 등 8개 구의회)
  - 연임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광주 서구의회 등 24개 구의회)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위원회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 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 ⑤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 이상으로 강화(부산 중구의회, 서울 양천구의회)하고,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서울 양천구의회 등 4개 구의회)
- ⑥ 재량으로 되어 있는 출장비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부산 사상구의회) 또는 의무적 환수 규정 마련(서울 양천구의회)

## [타 기관 우수사례]

###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광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소속 의원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을 표명하였을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담수령 방지

평가대상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 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내의 출장을 말한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비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  
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현황

-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세부기준은 각 구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규정하거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준용

### < 관계 법령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 문제점

① 인천 계양구·중구의회는 구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장비 지급의 타당성·적정성 확보 곤란

※ 대부분 지방의회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천시 계양구·중구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만 규정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음

② 「공무원여비규정」은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운임·식비를 제외하고 일비만 지급하도록** 했으나

- 대구 동구의회 등은 **식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해 여비 과다 지급

③ 서울 양천구의회는 **국내여비 중 항공·자동차 등 운임비(교통비)를 사후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해 허위 출장 유발 가능성

※ 정액지급은 실제 출장여부 확인 없이 여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허위출장에 따른 출장비 부정 수령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운임·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선됨

[표 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규정 현황

구 분	① 여비지급 규정	② 근무지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 지급
대구 동구		식비 지급(별표2)
서울 구로구		교통비·식비 지급(별표1)
서울 마포구		교통비·식비 지급(별표1)
서울 양천구		식비 지급(별표3)
인천 계양구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만 규정)	
인천 중구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만 규정)	

### < 권익위 점검사례 >

- (△△군) 지방의원 9명은 3,542건의 근무지 내 출장 여비로 조례 등 근거도 없이 1건당 식비 25,000원을 초과 지급 받아 총 88,550천원 부당 수령
- (◆◆군) 여비 조례 규정을 근거로 근무지 내 출장 1건당 45,000원씩 초과 지급하는 등 총 16,56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근무지 내 출장 여비 지급 중지
- (●●군) 의원 A는 해외체류기간에 3회에 걸쳐 45,000원씩 135,000원의 근무지 내 출장 여비를 수령. 의원 B와 C는 해외체류기간에 각각 1회 45,000원의 근무지 내 출장 여비 수령
- (△△군) 전자결재를 통해 전 의원을 주 5일 단위로 관내 상시 출장을 의장에게 상신 및 결재를 받은 후 정확한 출장 정산·관리 없이 일괄 지급 방식으로 지방의원 7명에 대해 3년 6개월 동안 79,149천원의 여비 지급
- (▲▲군) 지방의원 8명에 대해 약 1달가량 관내 출장을 상신하고 별도 증빙 및 정산 없이 약 10여만 원을 수당처럼 수령, 이후 지급의 적정성 문제 제기로 지급 중지

## □ 개선방안

### ① 구의원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마련(인천 계양구·중구의회)

\*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여비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명시하는 등 여비지급 근거 마련

### ② 근무지 내 출장 여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교통비·식비 지급 규정 삭제(대구 동구의회 등 4개 구의회)

### ③ 운임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 개선(서울 양천구의회)

## [타 기관 우수사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의장·부의장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고 :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비고란을 준용한다.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 평가대상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 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4만원 초과 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집행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점검·모니터링 규정 없음

####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공개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 현황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부산시 금정구의회 등 12개 구의회를 제외한 49개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해 자체 조례 운영

### < 관계 법령 >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에 따름

####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4. 업무추진비(203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 문제점

① 행안부 훈령은 **접대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 1인 1회당 4만원 이하(불가피성 입증 시 4만원 초과)로 집행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집행

- 대구 북구의회 등은 접대비 집행기준을 정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집행기준(3~4만원) 초과를 허용하면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아** 법령 위반 소지

② 대부분 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열거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사용 제한을 따르도록** 하여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 부산 사상구의회 등은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고 타 법령 준용 여부도 불분명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우려
- ③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환수·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 대구 중구의회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부당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
  - 광주 광산구의회 등은 환수·징계 등 제재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문화될 우려
- ④ 대부분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의원 교육,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의무화했으나
- 부산 수영구의회 등은 의원 교육과 사용내역 정기적 점검(모니터링) 규정이 모두 없고,
  - 광주 북구의회 등은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일부를 재량규정으로 하는 등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

[표 6]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규정 현황

구분	① 집행기준	② 사용제한	③ 부당사용제재	④ 교육 및 점검	
				교육	점검
광주 광산구			임의규정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임의규정	임의규정	
광주 서구					
대구 남구			임의규정		
대구 동구			임의규정		
대구 북구	미흡				
대구 서구					
대구 수성구	미흡		임의규정		규정없음
대구 중구			규정없음		규정없음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				임의규정	임의규정

구분	① 집행기준	② 사용제한	③ 부당사용제재	④ 교육 및 점검	
				교육	점검
부산 강서구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임의규정	
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			임의규정	임의규정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규정없음	규정없음	임의규정	규정없음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미흡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미흡			규정없음	규정없음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규정없음	임의규정	규정없음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임의규정	
서울 금천구			임의규정	규정없음	규정없음
서울 노원구			임의규정	임의규정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미흡	임의규정	임의규정	
서울 마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			임의규정	임의규정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임의규정	임의규정	
서울 영등포구			임의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임의규정	임의규정	
인천 중구					

### < 언론보도 사례 >

- ◆ “자택 인근식당·해외서 사용”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의심사례 139건(‘23.3, 뉴시스)
- ◆ 선거운동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사용한 의원은 누구? (‘22.11, 오마이뉴스)
-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 명절선물 (‘22.2, 뉴스프리존)

## □ 개선방안

- ① 행안부 훈령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접대비 집행기준을 조례에 반영(대구 북구의회 등 3개 구의회)
- ②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기준 마련 또는 미흡한 사용제한 기준을 보완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부산 사상구의회 등 3개 구의회)
- ③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환수·징계 등 제재규정을 조례에 반영(대구 중구의회 등 4개 구의회) 또는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광주 광산구의회 등 13개 구의회)
- ④ 의원대상 업무추진비 교육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거나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부산 수영구의회 등 16개 구의회)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기적 점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거나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광주 북구의회 등 9개 구의회)

## [타 기관 우수사례]

###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평가대상

고문 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 ■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조례」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 5년 이상의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결산검사위원"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현황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보조금 및 위탁금 정산검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고 매월 수당 지급

### □ 문제점

- 부산 서구는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만 있고 연임 제한이나 재위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 이로 인한 부패발생이 우려되고,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 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 □ 개선방안

- 부산 서구는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타 기관 우수사례]

#### ■ 고양시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관리 강화

평가대상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국외출장 조례

### ■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 ■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4조(귀국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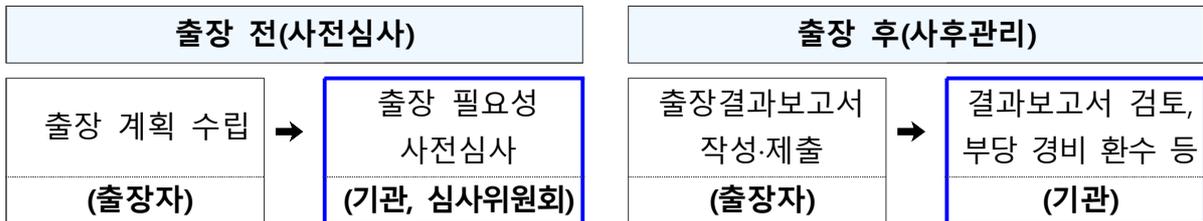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공무국외여행관련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황

- 지방 공무원의 국외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 흐름에 따라 출장 전·후 각각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두고 있음
  - (출장 전) 출장 계획을 수립(출장자)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출장이 타당한지 사전심사 실시(기관의 국외출장심사위원회)
    - ※ 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국외출장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여행 경비의 적정성 등 심사
  - (출장 후)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출장자), 계획상의 출장 수행 여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부적절한 출장 경비 유무 등(기관)
    - ※ 국외출장 목적·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 □ 문제점

- ①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사실상 내부위원만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
  - 서울 광진구 등은 출장비 외부 지원 여부에 따라 국외출장 심사위원 구성을 다르게 규정\*, 통상적 출장은 자체 예산으로 가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외부위원은 사전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우려
    - \* 다른 기관의 경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하고 소속기관 자체 예산으로 가는 출장은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
    -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20.1.1.), 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포함 의무화
- ② 서울 서초구 등은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점검·검토 의무는 없어 표절 여부, 내용·서식 등 충실성 검토가 미흡해 표절·부실 등 유발 가능성

- ③ 대전 대덕구 등은 사전심사를 거친 출장 계획과 다른 관광 위주 출장 등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경비의 환수 규정 미흡으로 재정누수 가능성 존재

[표 7]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출장 전·후 통제장치 현황

구분	출장 전		출장 후			
	① 출장심사 외부위원 참여		② 결과보고서 검토		③ 부당 경비 환수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광주 광산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광주 남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광주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광주 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광주 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남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서구			미흡		미흡	
대구 수성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 대덕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 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 유성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강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금정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남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동래구	미흡		미흡	미흡		
부산 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사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사하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수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연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영도구	미흡		미흡			

구분	출장 전		출장 후			
	① 출장심사 외부위원 참여		② 결과보고서 검토		③ 부당 경비 환수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부산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해운대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강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강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관악구			미흡	미흡		
서울 광진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구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금천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노원구	미흡		미흡			
서울 동대문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동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마포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서대문구			미흡			
서울 서초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성동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성북구	미흡		미흡			
서울 송파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양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영등포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용산구	미흡		미흡			
서울 은평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종로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중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중랑구	미흡		미흡		미흡	
울산 남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울산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계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	
인천 남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미추홀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부평구	미흡		미흡	미흡		
인천 연수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 □ 개선방안

- ① 국외출장 사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국외출장 사전심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개선(서울 광진구 등 56개 자치구, 광주 서구의회 등 32개 구의회)
- ②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뿐만 아니라 보고서 충실성(내용·서식, 표절여부 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61개 자치구, 울산 남구의회 등 49개 구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p>「OOOO시 공무국외출장 조례」</p> <p>제14조(귀국보고서 제출)</p> <p>&lt; 신 설 &gt;</p>	<p>제14조(귀국보고서 제출)</p> <p>③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u>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p>

- ③ 출장계획·목적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 마련(대전 동구 등 27개 자치구, 부산 수영구의회 등 15개 구의회)

## [타 기관 우수사례]

###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5명으로 한다.

1. 예산부서의 장 및 인력개발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부서의 장
2. 국제통상·행정·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실무자가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대전광역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환수한다.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 제7장 공무국외출장

2.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가. 복무관리위원회 심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2의 허가권자는 예규 제2장의 복무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심사

- 심사위원회는 <붙임 2> 서식에 의거 심사를 실시

○ 복무관리위원회에는 민간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되,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제외함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음

5. 보고서 제출·등록 및 사후관리

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나. 보고서의 정보유통망 등록

(1) 소속 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붙임 3>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s://btis.mpm.go.kr>)에 등록(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하며, 이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함

(가)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해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자료의 중복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되도록 조치하고, 등록하기 곤란한 수집자료는 자료 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등재

## 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평가대상

공무원 여비 조례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행자의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정산 및 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다.

**제7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별 표]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구청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지방공무원의 국내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개별 조례로 별도 규정
  - 운임비·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서류 제출 후 정산

**< 관계 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문제점

- ① 「공무원 여비 규정」은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서류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의해 사후 정산하도록 했으나,
  - 대전 동구 등은 국내 출장 정산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실비 정산을 하지 않거나 편법·악용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부정하게 편취 할 우려
    - ※ 허위영수증으로 운임비, 숙박비 수령 후 정산서류에는 고의로 누락
- ②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여비 부정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했으나
  - 부산 북구 등은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제재의 실효성 미약
- ③ 「공무원 여비 규정」은 운임·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음에도
  - 서울 중구 등은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해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령 및 예산 낭비 야기
    -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1.6.)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국내출장 중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

< 언론보도 사례 >

- 출장비 부정수급 여전 ... 인천 〇〇〇구 547명 적발 ('22.3, 경인방송)
  - 구는 2016년과 2018년, 2019년 일부 기간의 출장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천 14건(547명)을 적발해 2천 26만원을 회수
- 〇〇시, 수당·출장비 부정수령 공무원 82명 적발...126만원 환수 ('22.3, 인천일보)

[표 8]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규정 현황

구분	① 여비서류 정산		②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③ 출장여비 실비 지급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미흡	미흡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부산 금정구	미흡	미흡				
부산 남구						
부산 동구	미흡	미흡				
부산 동래구	미흡					
부산 북구			미흡			
부산 사상구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사하구	미흡	미흡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미흡					
부산 중구	미흡					미흡
부산 해운대구	미흡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미흡	미흡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조례없음		조례없음		조례없음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미흡	미흡				

구분	① 여비서류 정산		②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③ 출장여비 실비 지급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서울 동작구	미흡					
서울 마포구		미흡				
서울 서대문구	미흡	미흡				
서울 서초구		미흡		미흡		
서울 성동구	미흡	조례없음		조례없음		조례없음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종로구		미흡		미흡		
서울 중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중랑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미흡	미흡		
인천 미추홀구			미흡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미흡		
인천 중구						

## □ 개선방안

①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해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대전 동구 등 17개 자치구, 서울 동대문구의회 등 14개 구의회)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중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②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2배가 아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개선(부산 북구 등 5개 자치구, 서울 서초구의회 등 6개 구의회)

③ 운임·숙박비를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지급기준 개선

(서울 중구, 부산 중구의회)

※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지역별 상한선 설정

## [타 기관 우수사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9. 공용차량 관리 강화

평가대상

공용차량 관리 규칙

### ■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19조(차량 관리방법)

-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차량의 용도 변경) ① 각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 변경 등으로 차량의 용도(전용, 의전용 및 업무용)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차량 용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또는 의전용차량은 반드시 별표 1의 운행기준을 경과하여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현황

- 각 지자체 및 지방의회는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운영 중**
  - 전용차량, 업무용차량, 특수차량 등 차종(용도)별 차량(구입 및 임차)의 정수(定數)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영
  - 해당 규칙은 공용차량의 차종(용도) 변경, 차량 교체 및 사용·관리 기준 등을 규정

### < 공용차량 관리 관련 규칙 주요 내용 >

- ◆ (차량정수) 차종·차형별 구매, 임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업무량, 정원 등에 따라 결정)
- ◆ (차종(용도))

차종(용도)	차형(크기)	배정 대상
1. 전용(승용 자동차)	대형승용차	시장, 의회의장 등
2. 의전용(승용 자동차)	대형, 중형 승용차	시 본청, 시 의회 등
3. 업무용(승용 자동차)	중형~경형 승용차	단위 부서
4. 승합자동차	대형~경형 승합차	"
5. 화물자동차	대형~경형 화물차	"
6. 특수자동차	급수차, 소방차 등	"

- ◆ (차종(용도) 변경) 차종 운행량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특수용 차량 상호 간 차종 변경
- ◆ (차량 교체) 내구연한 초과, 수리사용 불가 등의 경우 가능
- ◆ (사용 관리) 개인적 용도로 사용 금지, 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 등

## □ 문제점

- ① 공용차량은 정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정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므로 정수 관리가 핵심임에도
  - 서울 송파구 등은 공용차량 관리대상 규정에 임차 차량을 명시하지 않아 정수를 초과해 차량을 임차하는 등 편법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
- ② 인천 계양구 등은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공개 규정이 없거나

보유 현황만 공개하는 등 규정이 미흡해 공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한 외부통제 한계

※ 중앙행정기관은 차량의 정수 및 그에 따른 운영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 공용차량 정보공개 현황 〉

공개 내용	중앙부처	일부 자치구
정수 현황	공개	미공개
보유 현황	공개(구입·임차 표기)	공개(구입·임차 미표기)
전용차량 보유현황	"	미공개
구입(임차) 및 처분현황(최근 1년간)	"	미공개

③ 부산 수영구 등은 차종(용도) 변경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 승용자동차의 차종 변경을 제한하지 않아, 편법 운영\*에 따른 재정 누수 우려

\* 기관장 전용자동차를 업무용(또는 의전용) 승용차로 차종 변경 후 신형 자동차를 새로 임차하여 기관장 전용자동차로 사용

※ 통상 차종(용도)의 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간 가능하고,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등)간 변경은 제한

※ 중앙행정기관은 최단운행기간 및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만 업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 언론보도 사례 〉

■ OO시는 기존의 전용차량(20.2. 구입)을 업무용으로 바꾸고, 새로운 차량을 렌트하여 전용차량으로 이용('22.7.12, 인천일보)

④ 공용차량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취지로 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서울 광진구 등은 공용차량에 공무용임을 표시하는 규정이 없어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출퇴근 등) 방지 미흡

[표 9] 공용차량 관리 규정 현황

구분	① 임차차량 포함	② 현황 공개	③ 차종변경 기준	④ 공용차량 표시
광주 광산구	미흡	미흡		
광주 남구	미흡	미흡		
광주 동구	미흡	미흡		
광주 북구	미흡	미흡		
광주 서구	미흡	미흡		미흡
대구 남구		미흡		미흡
대구 동구		미흡		
대구 북구		미흡		
대구 서구		미흡		
대구 수성구		미흡		
대구 중구		미흡		미흡
대전 대덕구	미흡	미흡		
대전 동구	미흡	미흡		
대전 서구	미흡	미흡		미흡
대전 유성구	미흡	미흡		
대전 중구	미흡	미흡		
부산 강서구	미흡	미흡		
부산 금정구		미흡		미흡
부산 남구	미흡	미흡		
부산 동구	미흡	미흡		
부산 동래구		미흡		
부산 북구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사상구	미흡	미흡		
부산 사하구		미흡		
부산 서구	미흡	미흡		
부산 수영구			미흡	
부산 연제구	미흡	미흡		
부산 영도구	미흡	미흡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구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금천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노원구		미흡		
서울 동대문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동작구	미흡	미흡		미흡

구분	① 임차차량 포함	② 현황 공개	③ 차종변경 기준	④ 공용차량 표시
서울 마포구	미흡	미흡		
서울 서대문구		미흡	미흡	
서울 서초구	미흡	미흡		
서울 성동구		미흡		
서울 성북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송파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양천구	미흡	미흡		
서울 영등포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용산구		미흡	미흡	
서울 은평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종로구		미흡		미흡
서울 중구		미흡		
서울 중랑구	미흡	미흡	미흡	
울산 남구	미흡	미흡		미흡
울산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계양구		미흡		
인천 남동구	미흡	미흡		
인천 동구		미흡		
인천 미추홀구	미흡	미흡		
인천 부평구	미흡	미흡		
인천 연수구	미흡	미흡		
인천 중구	미흡	미흡		

## □ 개선방안

- ① 차량 정수 관리대상에 임차 차량도 포함되도록 명시(서울 송파구 등 40개 자치구)
- ②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 마련(인천 계양구 등 57개 자치구)
  - ※ 정수 현황, 실제 보유·운영 현황 등이 모두 공개되도록 서식 정비
- ③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간 외 승용차 간에는 차종(용도) 변경이 제한되도록 명시(부산 수영구 등 8개 자치구)
- ④ 공용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도록 규정 마련(서울 광진구 등 20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직속기관 및 사업소·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 14. (생략)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20조(차량관리방법)

-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용·단속용 차량 등 공무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26조(지도·감독 등)

- ④ 차량 총괄 관리 담당부서는 매년 초 차량보유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10.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평가대상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 ■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9조(환수)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현황

○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결산기준 총 3.4조원

-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의 징수액에 따라 5~15% 포상금 지급

< 2021년 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 현황 >

구분	계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건수	34,189,455	61,635	1,170,216	3,692,139	7,028,946	22,236,519
세액 (백만원)	3,397,905	230,634	1,254,995	549,381	734,624	628,272
건별세액 (천원)	99	3,742	1,072	149	105	28

(출처 : 지방세통계연감)

○ 「지방세기본법」은 체납된 지방세 세입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조례로 위임

### < 관계 법령 >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⑥ (생략)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문제점

- ①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실무를 하지 않는 국·과장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 대구시 중구 등은 관리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 관리자가 사익을 위해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실적 또는 은닉재산 정보 등을 가로채는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광주시 광산구 등은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국장급 이상으로 정해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급 누락
- 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 부산시 강서구 등은 공적심의위원회가 없어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 및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 곤란
  - 대구 남구 등은 외부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 부산 동구 등은 환수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금 환수가 불가능해 포상의 영예성 훼손
- 부산 서구는 환수 규정에 이자가산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 가능성
- 대전 중구는 행정청 과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우려

[표 10]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규정 현황

구분	① 포상금 지급제한		② 공적심사위원회		③ 부적격자 포상금 환수		④ 행정착오 이자징수
	제한규정	관리자급 제외	공적심사위 개최	외부위원 참여	환수	이자가산	
광주 광산구		미흡		미흡			
광주 남구		미흡		미흡			
광주 동구		미흡		미흡			
광주 북구		미흡		미흡			
광주 서구		미흡		미흡			
대구 남구		미흡		미흡			
대구 동구		미흡		미흡			
대구 북구		미흡		미흡			
대구 서구		미흡		미흡			
대구 수성구		미흡		미흡			
대구 중구	규정 없음			미흡			
대전 대덕구	규정 없음			미흡			
대전 동구	규정 없음			미흡			
대전 서구	규정 없음			미흡			
대전 유성구	규정 없음			미흡			
대전 중구	규정 없음			미흡			징수
부산 강서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부산 금정구	규정 없음			미흡			
부산 남구		미흡		미흡			
부산 동구		미흡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부산 동래구		미흡		미흡			
부산 북구	규정 없음			미흡			
부산 사상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부산 사하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부산 서구		미흡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부산 수영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부산 연제구		미흡		미흡			
부산 영도구		미흡	규정 없음				

구분	① 포상금 지급제한		② 공적심사위원회		③ 부적격자 포상금 환수		④ 행정착오 이자징수
	제한규정	관리자급 제외	공적심사위 개최	외부위원 참여	환수	이자가산	
부산 중구		미흡		미흡			
부산 해운대구		미흡		미흡			
서울 강북구		미흡					
서울 강서구		미흡					
서울 관악구		미흡					
서울 광진구		미흡					
서울 구로구		미흡					
서울 금천구		미흡					
서울 노원구		미흡					
서울 동대문구		미흡					
서울 동작구		미흡					
서울 마포구		미흡					
서울 서대문구		미흡					
서울 서초구		미흡					
서울 성동구		미흡					
서울 성북구		미흡					
서울 송파구		미흡					
서울 양천구		미흡					
서울 영등포구		미흡					
서울 용산구		미흡					
서울 은평구		미흡					
서울 종로구		미흡					
서울 중구		미흡					
서울 중랑구		미흡					
울산 남구	규정 없음			미흡			
울산 중구		미흡		미흡			
인천 계양구	규정 없음			미흡			
인천 남동구		미흡		미흡			
인천 동구	규정 없음			미흡			
인천 미추홀구		미흡		미흡			
인천 부평구	규정 없음			미흡			
인천 연수구	규정 없음			미흡			
인천 중구		미흡		미흡			

※ 관리자급인 5급 과장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61개 자치구 모두 없음  
 지자체에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규정도 모두 없음

## □ 개선방안

- ①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또는 개선
  -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대구 중구 등 17개 자치구)
  -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5급(과장) 이상으로 개선(광주 광산구 등 43개 자치구)
    - ※ 관리자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액 직접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로 규정
- ②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 징수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부산 강서구 등 7개 자치구)
  - 공적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를 명시(대구 남구 등 32개 자치구)
- ③ 부적격자가 징수포상금을 받지 않도록 규정 마련 또는 개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및 이자 가산 규정 신설(부산 동구 등 3개 자치구)
  - 부적격자 징수포상금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개선(부산 서구)
  -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삭제(대전 중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2조(지급대상)

⑤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의 대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으로 최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3.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1명

제11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11.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평가대상

포상조례 등

###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정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4조(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황

- 각 지자체 및 지방의회는 시정 또는 사회 공헌 공적이 현저한 시민·소속 공무원 등의 포상을 위해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

- 포상은 표창장 및 상장·감사장 등으로 구별하며, 포상권자는 지자체장으로 하되,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대회 성적에 따른 상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적심사위를 거치지 않음
- 포상 대상자에게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보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 부여

## □ 문제점

- ① 포상은 공정성·영예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대상자 선정 시 공적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 광주 남구 등은 '특별한 경우'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포상 적격성 확보가 미흡하고 포상에 기반한 상금·부상 남발, 인사 우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 등 부패 우려
    - ※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포상권자(지자체장, 의회 의장)가 임의로 표창장 등을 발급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의회는 의장을 공적심사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회 의장이 표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
- ②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당연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 부산 동래구 등은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자, 성범죄자 등이 포상을 받을 우려
-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함에도
  - 61개 자치구가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소극 행정 유발
    - ※ 정부 포상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표 11] 포상 관련 규정 현황

구분	① 공적심사 생략		② 포상 제외자		③ 포상 취소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광주 광산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광주 남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광주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광주 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광주 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남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수성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 대덕구	미흡				미흡	미흡
대전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 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 유성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강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금정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남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동래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사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사하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수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연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영도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부산 해운대구					미흡	미흡
서울 강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강서구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관악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광진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구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금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노원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구분	① 공적심사 생략		② 포상 제외자		③ 포상 취소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서울 동대문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동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마포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서대문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서초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성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성북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송파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양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영등포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용산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은평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종로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중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울산 남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울산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계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남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동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미추홀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부평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연수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 중구	미흡			미흡	미흡	미흡

## □ 개선방안

① 표창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특별한 경우 등)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또는 보완(광주 남구 등 33개 자치구, 대전 중구의회 등 8개 구의회)

※ 공적심사위원회에 포상권자(의회의장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②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 규정 마련(부산 동래구 등 55개 자치구, 서울 강서구의회 등 52개 구의회)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61개 자치구, 울산 남구의회 등 51개 구의회)

## [타 기관 우수사례]

### ■ 「강원도 포상 조례」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부터 제7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도민 20명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3(포상취소)** ① 제10조 따른 공적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 ■ 「전라북도 포상 조례」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포상 담당부서에서는 사법 및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 12.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평가대상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 「광주광역시 복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평가기준 :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 현황

- 지자체는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 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결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향 등을 심의

### □ 문제점

- ① 광주 남구 등은 부적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어 위원 구성의 공정성 훼손
- ② 광주 북구 등은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두지 않아 장기 연임

으로 인한 친소 관계 형성 등 부패 발생 개연성

- ③ 공정한 심의를 위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 부산 해운대구, 서울 동대문구는 제척·회피 규정이 없고
  - 대구 남구는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광주 광산구 등은 회피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
- ④ 서울 동작구 등은 연구부정행위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결과물 품질 및 책임성 확보 곤란

[표 12] 정책연구용역 관련 규정 현황

구분	용역심의위원회			④ 불량 용역수행자 제재
	① 부적격자 해촉	② 연임제한	③ 제척·회피	
광주 광산구			회피 재량	규정 없음
광주 남구	규정 없음		회피 재량	
광주 동구				
광주 북구		연임 가능	회피 재량	
광주 서구				
대구 남구	규정 없음		제척·회피 미흡	
대구 동구				규정 없음
대구 북구				규정 없음
대구 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부산 금정구				규정 없음
부산 남구				
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	규정 없음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구분	용역심의위원회			④ 불량 용역수행자 제재
	① 부적격자 해촉	② 연임제한	③ 제척·회피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규정 없음
부산 연제구				규정 없음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규정 없음
부산 해운대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규정 없음
서울 광진구				규정 없음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규정 없음
서울 노원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서울 동대문구			회피 없음	규정 없음
서울 동작구				규정 없음
서울 마포구				규정 없음
서울 서대문구				규정 없음
서울 서초구				규정 없음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규정 없음
서울 영등포구		연임 가능		규정 없음
서울 용산구				규정 없음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서울 중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서울 중랑구				규정 없음
울산 남구				규정 없음
울산 중구			규정 없음	
인천 계양구				규정 없음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규정 없음
인천 미추홀구				규정 없음
인천 부평구				규정 없음
인천 연수구		연임 가능		
인천 중구		연임 가능		

## □ 개선방안

- ①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광주 남구 등 4개 자치구)
- ②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명시(광주 북구 등 5개 자치구)
- ③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 또는 회피를 강행규정으로 개선(부산 해운대구 등 9개 자치구)
- ④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규정(불이익 부여) 마련(서울 동작구 등 29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3(정책연구 윤리강화)** ①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 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용역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게 하여 용역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평가 시 용역부정행위를 점검하여야 하고, 용역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용역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부서 및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0조(용역의 평가)** ① 주관부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평가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13.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평가대상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	---------------

<p>■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p> <p><b>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li> <li>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li> <li>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li> </ol> <p>*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없음</p> <p>■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p> <p><b>제12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b>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u>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u>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u></p> <p>■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p> <p><b>제9조(협력사업비 공개 등)</b>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u>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u></p> <p>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금고에서 출연할 <u>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p>
--

□ **평가기준 :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 현황

- 「지방회계법」은 지자체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에 금고지정 방법·평가기준, 금고지정 절차, 금고약정 및 해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고지정 방법, 금고신청 금융기관 제출자료 확인 및 평가 등 심의
  - 위원장 포함 **9~12명** 이내 구성 및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구성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는 세입예산 편성 후 총액을 공개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 시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 협력사업비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 시 지자체에 출연 또는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 < 관계 법령 >

####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 4. 금고의 지정절차

#####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4]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 문제점

-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평가 및 금고 지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위원 구성뿐만 아니라 안전 심의 등에서도 공정성·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나
  - 부산 강서구 등은 민간전문가 비율을 행안부 예규(과반수 이상) 보다 완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저하
  - 광주 남구 등은 금고지정심의위의 심의 안전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거나 기피·회피가 부실하게 규정되어 이해충돌 발생 시 통제 불가
- ②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공고 및 통지하고, 제안서 제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 서울 구로구 등은 금고지정 통지,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재량

으로 규정하여 관련 정보가 일부 금융기관에만 제공될 가능성

③ 행안부 예규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했으나

- 광주 광산구 등은 협력사업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 대전 대덕구 등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규정을 누락하여 불투명한 집행 우려 및 외부통제 곤란

[표 13] 금고 지정·운영 관련 규정 현황

구분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② 금고지정 절차		③ 협력사업비 공개
	민간전문가 비율 (과반수 이상)	제척·기피·회피	공고통지	교부·열람	
광주 광산구				미흡	규정 없음
광주 남구		규정 없음		미흡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규정 없음		미흡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미흡	
대구 동구			미흡	미흡	
대구 북구				미흡	규정 없음
대구 서구				미흡	
대구 수성구				미흡	
대구 중구		규정 없음		미흡	
대전 대덕구		규정 없음		미흡	미흡
대전 동구		규정 없음		미흡	미흡
대전 서구				미흡	미흡
대전 유성구				미흡	미흡
대전 중구					미흡
부산 강서구	구성비율 없음	규정 없음		미흡	
부산 금정구				미흡	
부산 남구	구성비율 없음			미흡	
부산 동구				미흡	
부산 동래구			미흡	미흡	
부산 북구		규정 없음		미흡	
부산 사상구	구성비율 없음	규정 없음	미흡	미흡	
부산 사하구			미흡		
부산 서구				미흡	

구분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② 금고지정 절차		③ 협력사업비 공개
	민간전문가 비율 (과반수 이상)	제척·기피·회피	공고통지	교부·열람	
부산 수영구				미흡	
부산 연제구	구성비율 없음	기피·회피 미흡		미흡	
부산 영도구				미흡	
부산 중구		규정 없음		미흡	
부산 해운대구				미흡	
서울 강북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서울 강서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서울 관악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서울 광진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서울 구로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미흡	
서울 금천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서울 노원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서울 동대문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서울 동작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미흡	
서울 마포구		기피·회피 미흡	미흡	미흡	
서울 서대문구			미흡	미흡	
서울 서초구			미흡		
서울 성동구			미흡		
서울 성북구			미흡		
서울 송파구			미흡		
서울 양천구			미흡	미흡	
서울 영등포구			미흡	미흡	
서울 용산구			미흡	미흡	
서울 은평구			미흡	미흡	
서울 종로구			미흡	미흡	
서울 중구			미흡		
서울 중랑구			미흡		
울산 남구		규정 없음			
울산 중구		규정 없음		미흡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규정 없음		미흡	
인천 부평구				미흡	
인천 연수구				미흡	
인천 중구					

### < 언론 사례 >

- ◆ '○○군 지정금고 협력사업비 편법 운용 논란' (20.3, 영남경제)
  - 협력사업비 5000~6000만원 세수 편입없이 민간단체 통해 편법운용
  - 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사)○○군교육발전위원회는 2009년부터 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지역과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적게는 4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500만원까지 지난 11년간 4억9천만원을 기탁받았음

## □ 개선방안

- ① 금고지정 심의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 민간전문가 위촉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부산 강서구 등 4개 자치구)
  -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광주 남구 등 23개 자치구)
- ②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재량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선(서울 구로구 등 52개 자치구)
-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금액 및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 협력사업비 공개 규정\* 마련(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 \* 협력사업비 총액,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규정 보완(대전 대덕구 등 5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 제8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3. 행정복지국장·국제도시행정국장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그 심의표를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7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4.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평가대상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등을 하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부의 안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부의 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의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4조(위원구성 등)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촉위원 임기 없음

##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현황

- 지자체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지방고유사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인허가 심의·의결, 조정 등)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위원회수	연평균 개최수	운영경비	설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강행	임의			
29,474	4	45,637	16,406	2,765	8,951	499	853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 각 법령은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 근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이해충돌 방지 장치, 해촉기준 등을 제시

□ 문제점

- ①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 광주 남구 등은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척 규정이 없거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만 제척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심의 배제 부실
  - 대구 중구 등은 기피 규정 부재, 위원장이 단독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거나 기피 대상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서 배제하지 않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곤란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기피 대상 위원은 당연히 제척되므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확인적 규정을 둠

  - 부산 해운대구 등은 회피 규정이 없거나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들의 회피 의무를 무력화
- ② 대전 대덕구 등은 해촉 규정 부재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르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위원직을 유지하는 부조리 발생
- ③ 대구 서구 등은 위촉위원의 임기·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연임 제한을 하지 않아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소관계 형성 등으로 인한 부패 개연성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위원회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 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표 14]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기본조례 현황

(× : 규정 없음, △ 규정 미흡)

구분	적용범위	① 이해충돌방지			② 해촉	③ 임기, 연임제한
		제척	기피	회피		
광주 광산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	△		3년 이내, 3회 연임
광주 남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	×	×	2년, 1회 연임
광주 동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2년, 1회 연임
광주 북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	×		임기 없음, 3회 이상 제한
광주 서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			3년 이내 2회 연임
대구 남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1회 연임
대구 동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2년, 1회 연임
대구 북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2년, 1회 연임
대구 서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2년, 연임
대구 수성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연임
대구 중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	×		2년, 2회 연임
대전 대덕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	×	×	3년 3회 초과 제한
대전 동구	개별조례 우선 적용, 그 외 기본조례 적용	×	×	×		3년 이내, 3회 초과 제한
대전 서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임기 없음, 3회 이상 제한
대전 유성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임기 없음, 3회 이상 제한
대전 중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2년 이내, 3회 초과 제한
부산 강서구	기본조례 없음					
부산 금정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1년 2회 연임 2년 2회 연임 3년 1회 연임
부산 남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부산 동구	기본조례 없음					
부산 동래구	기본조례 없음					

구분	적용범위	① 이해충돌방지			② 해측	③ 임기, 연임제한
		제척	기피	회피		
부산 북구	기본조례 없음					
부산 사상구	기본조례 없음					
부산 사하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임기 없음 3회 이상 제한
부산 서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규정 없음
부산 수영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부산 연제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부산 영도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부산 중구	기본조례 없음					
부산 해운대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x	x	x		3년 이내 2회 초과 제한
서울 강북구	기본조례 없음					
서울 강서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2년 이내 4년 초과 제한
서울 관악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광진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구로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2년 이내 1회 연임
서울 금천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x	x	x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노원구	기본조례 없음					
서울 동대문구	기본조례 없음					
서울 동작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마포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서대문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서초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x	x	x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성동구	기본조례 없음					
서울 성북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임기없음 6년 초과 제한
서울 송파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양천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영등포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용산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구분	적용범위	① 이해충돌방지			② 해촉	③ 임기, 연임제한
		제척	기피	회피		
서울 은평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서울 종로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	×		<b>임기없음</b> 2회 초과 제한
서울 중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	×	×		3년 이내 <b>연임규정 없음</b>
서울 중랑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6년 이내 <b>연임규정 없음</b>
울산 남구	기본조례 없음					<b>임기 없음</b> 3회 이상 제한
울산 중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	×	×		<b>임기 없음</b> 3회 이상 제한
인천 계양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3년 이내 2회 초과 제한
인천 남동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인천 동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2년, 1회 연임
인천 미추홀구	기본조례 없음					
인천 부평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b>규정 없음</b>
인천 연수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3년 이내 1회 연임
인천 중구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기본조례 적용	×	×	×		<b>임기 없음</b> 6년 초과 제한

## □ 개선방안

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 제척 규정 신설 또는 제척 기준 보완(광주 남구 등 15개 자치구)
- 기피 규정 신설 또는 기피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 기피 대상 위원은 의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개선(대구 중구 등 17개 자치구)
- 회피 규정 신설 또는 강행규정으로 개선(부산 해운대구 등 19개 자치구)

②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마련(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③ 위촉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 마련(대구 서구 등 14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년이 10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 위촉 사전검토 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15.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평가대상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보조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사업 추진
5.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시행(20.3.31.)
- 동우회의 설립·회원 자격 등과 함께 동우회가 지방행정 발전, 공익 봉사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

**< 지방행정동우회법 주요 내용 >**

◆ **제정 이유**

-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 마련

◆ **주요 내용**

- **(회원 자격)** 지자체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정회원) 및 동우회에서 위촉한 자(명예회원)
- **(사업)** 1. 지자체간 협력 증진, 2. 지방행정 발전, 3. 공익 봉사, 4. 회원 친목 도모, 5. 회원 복지 증진, 6. 그 밖에 동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정 지원)**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감독)** 보조금 지급 시 서류 제출 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동우회를 운영·지원(보조금 등)

□ **문제점**

- ① 대전 동구 등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과 같이 법정 보조금 지원사업\*을 벗어나는 사업을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재정누수 가능성 존재

\*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개 사업(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

- ② 「지방행정동우회법」은 재정지원은 사업비에 한정하고, 지방보조금법, 비영리단체법도 보조금은 사업비로 한정하고 있으나

※ 「지방행정동우회법」입법 과정에서 당초 동우회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 마련('20.3.6.)

- 대전 서구는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 법적 근거 없는 지원으로 특혜 소지

**[표 15]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현황**

① 법정 지원사업 외에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 명시	대전 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남동구·연수구
② 사업비 외 운영비 지원 가능	대전 서구

**< 언론보도 사례 >**

- 00시 행정동우회가 00시 △△도서관 1층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버 컴퓨터 교육' 목적의 지방보조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로 지출('22.9.24, 헤럴드 경제)

□ **개선방안**

- ① 행정동우회 재정지원 대상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 삭제(대전 동구 등 8개 자치구)
- ② 행정동우회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등)가 아닌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규정 개선(대전 서구)

**[타 기관 우수사례]**

■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도지사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16.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 평가대상

###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 ■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부실 공사 방지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 중
- 해당 조례는 지자체 및 지방 공사·공단이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부실시공 신고 방법, 신고사항 확인 및 부실시공 판정,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



## □ 문제점

- 서울 광진구 등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고만을 접수하도록 규정하여 이후 발견한 부실시공은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

※ (광주) 동구·북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서울) 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

## □ 개선방안

-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하는 등 신고기한 개선(서울 광진구 등 18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17. 구립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평가대상

구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등

### ■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단원의 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운영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 ■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능, 운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형위원) ① 예술단체의 단원 위촉 시 전형, 단원의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전형, 심사 등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다.

\* 제척·기피·회피 없음

##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 현황

- 지자체는 지역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교향악단·국악단·합창단 등 다양한 예술단을 설치·운영
  - 대부분 예술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술단 업무, 공연 기획, 단원 해촉·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
  - 조례에는 예술단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단원 채용을 위한 전형방법,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해 규정

### < 국공립 예술단 현황 >

(단위 : 개, 명)

계	계	국립	공립(광역)	공립(기초)
단체수	360	14	68	278
종사인원	4,835	379	1,297	3,159

(문화체육관광부, '2022 공연예술조사' 보고서, '22.12.)

### < 관련 법령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문제점

- ① 신규 채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채용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명확한 채용기준을** 통해 채용 비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에도
  - 대구 남구 등은 지휘자 등 직책단원 또는 일반 단원을 구청장이 위촉·선발한다고만 명시하는 등 **단원 채용방식에 관한 규정 부재**
  - 광주 서구 등은 예술감독·지휘자·안무가 등 직책 단원 채용 방식을 추천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개인에 특혜 가능성
    - ※ 특별전형 방식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모집 단계에서부터 추천·자문 등 비공개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채용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 발생
  - 부산 사하구 등은 **공개모집 여부가 불분명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
- ② 연간 기본계획 수립, 공연 기획, 직책단원 위촉 또는 심의, 단원 해촉·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운영위원회와 단원 공개전형을 위한 전형위원회는 강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 대전 대덕구 등은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 서울 강북구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이 요구되는 전형위원회 규정에도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발생 소지**
- ③ 부산 남구 등은 공개전형으로 단원을 채용하면서 **실기·면접 등을 심사하는 전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지휘자, 예술단 담당 부서장 등이 결정하도록 해 공정성 미흡**

[표 16] 구립예술단 채용 관련 규정 현황

구분	① 전형(채용)방식		② 제척·기피·회피		③ 전형위원 규정
	지휘자 등 직책 단원	예술단원	운영위	전형위원	
광주 광산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자문기능	기본조례**	
광주 남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규정없음	운영위가 담당	
광주 동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기본조례	운영위가 담당	
광주 북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규정없음	규정없음	
광주 서구	단장 추천	공개전형	기본조례	운영위가 담당	
대구 남구	구청장이 위촉	규정없음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대구 동구	공개모집	공개모집	기본조례		규정 없음
대구 북구	조례 없음	-	-	-	
대구 서구	구청장이 위촉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대구 수성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대구 중구	공개모집	공개모집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대전 대덕구	단장 추천	공개모집	규정없음	운영위가 담당	
대전 동구	공개전형 또는 단장 추천	공개전형	규정없음		규정 없음
대전 서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기본조례	운영위가 담당	
대전 유성구	공개모집	공개모집	기본조례	자문위가 담당	
대전 중구	구청장 위촉	구청장 위촉	기본조례	기본조례	
부산 강서구	조례없음	-	-	-	
부산 금정구	조례없음	-	-	-	
부산 남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부산 동구	조례없음	-	-	-	
부산 동래구	공개모집	공개모집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부산 북구	공개모집	공개모집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부산 사상구	공개모집	공개모집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부산 사하구	공개모집 여부 불명확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부산 서구	구청장이 위촉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부산 수영구	조례 없음	-	-	-	
부산 연제구	공개모집 여부 불명확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 없음
부산 영도구	공개모집 여부 불명확	공개모집	운영위 규정없음		지휘자, 문화예술회관장이 담당
부산 중구	공개모집	공개모집	운영위 규정없음		지휘자, 합창단 담당부서장
부산 해운대구	공개모집 여부 불명확		운영위 규정없음		
서울 강북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규정없음	
서울 강서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기본조례	기본조례	

구분	① 전형(채용)방식		② 제척·기피·회피		③ 전형위원 규정
	지휘자 등 직책 단원	예술단원	운영위	전형위원	
서울 관악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기본조례	기본조례	
서울 광진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기본조례	
서울 구로구	<b>단장이 위촉</b>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서울 금천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b>규정없음</b>	<b>규정없음</b>	
서울 노원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서울 동대문구	<b>공개모집 여부 불명확</b>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서울 동작구	<b>구청장이 위촉</b>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서울 마포구	<b>구청장이 위촉</b>		운영위 규정없음	기본조례	
서울 서대문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기본조례	
서울 서초구	<b>구청장 위촉</b>	모집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서울 성동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b>규정 없음</b>		<b>규정없음</b>
서울 성북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기본조례	기본조례	
서울 송파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기본조례	기본조례	
서울 양천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규정 없음	기본조례	
서울 영등포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기본조례	기본조례	
서울 용산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서울 은평구	<b>공개모집 여부 불명확</b>	공개모집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서울 종로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없음</b>	
서울 중구	공개전형 또는 단장 추천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서울 중랑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울산 남구	조례없음	-	-	-	
울산 중구	<b>구청장이 선발</b>	<b>실기심사</b>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인천 계양구	<b>공개모집 여부 불명확</b>	공개전형	기본조례	기본조례	
인천 남동구	일반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인천 동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인천 미추홀구	<b>구청장이 위촉</b>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b>
인천 부평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기본조례	
인천 연수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기본조례	기본조례	
인천 중구	공개전형	공개전형	운영위 규정없음		<b>규정 없음 (지휘자가 심사)</b>

\* 직책 단원 : 예술감독, 지휘자, 안무가 등

\*\* 기본조례 :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 < 언론보도 사례 >

- ◆ ○○ 문화기관 연이은 내정설에 예술계 '기대반 우려반'(22.11.19, 중부매일)
  - "지역사람 키워야" vs "책임자 없어"
  - ○○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추천제' 전환 3명 후보자를 추천받음  
도는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그간은 관례대로 공개모집으로 진행했을 뿐 조례에는 추천제로 명시돼 있다."고 답함

## □ 개선방안

### ① 단원 채용 시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 직책 및 일반 단원을 **공개전형**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채용 규정 신설(대구 남구 등 10개 자치구)
  - ※ 신규채용의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자격·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제한경쟁방식을 병행
- 직책단원 채용 시 **단장 추천방식**을 **공개전형** 방식으로 개선(광주 서구 등 4개 자치구)
- 단원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함을 명시(부산 사하구 등 7개 자치구)

### ② 운영위원회 및 전형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 운영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대전 대덕구 등 6개 자치구)
- 전형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서울 강북구 등 4개 자치구)

### ③ 단원 채용 시 전형위원이 심사하도록 전형위원회에 관한 규정 마련 (부산 남구 등 29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단원은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지휘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는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예술단에는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 단원(이하"객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위촉)** ① 각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활동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악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청년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모집(신규모집, 수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전까지 구 보, 관악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1부
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1부

4. 사진(3.5cm×4.5cm)1매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예능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능심사위원회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예술단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인 외에 관련 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 중 관악구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18.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평가대상 법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신청자격)**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호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우선 순위표에 따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우선 순위표**(제5조제1항 관련)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	미과세대상자	

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b>비고</b>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현황**

- 각 지자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자로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

**문제점**

- 지자체는 매점 등 설치·관리위탁 신청자격을 정하면서 장애인 등을 우선 신청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선 순위표에 따라 계약자를 정하고 있으나
  - 대전 대덕구 등은 동일한 우선 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 계약자 선정기준이 없어 계약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표 17] 자치구별 우선순위 관련 규정 현황

구 분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구 분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광주 광산구	추첨	서울 강북구	기준 있음
광주 남구	추첨	서울 강서구	추첨
광주 동구	추첨	<b>서울 관악구</b>	<b>기준 없음</b>
광주 북구	추첨	서울 광진구	-
광주 서구	추첨	서울 구로구	기준 있음
대구 남구	-	서울 금천구	기준 있음
대구 동구	-	서울 노원구	
대구 북구	-	서울 동대문구	기준 있음
대구 서구	-	<b>서울 동작구</b>	<b>기준 없음</b>
대구 수성구	-	서울 마포구	기준 있음
대구 중구	-	서울 서대문구	기준 있음
<b>대전 대덕구</b>	<b>기준 없음</b>	<b>서울 서초구</b>	<b>기준 없음</b>
대전 동구	-	서울 성동구	기준 있음
대전 서구	-	서울 성북구	추첨
대전 유성구	-	서울 송파구	기준 있음
대전 중구	-	서울 양천구	기준 있음
부산 강서구	추첨	서울 영등포구	-
부산 금정구	-	<b>서울 용산구</b>	<b>기준 없음</b>
부산 남구	-	서울 은평구	기준 있음
부산 동구	-	<b>서울 종로구</b>	<b>기준 없음</b>
부산 동래구	-	서울 중구	기준 있음
부산 북구	-	서울 중랑구	기준 있음
부산 사상구	-	울산 남구	-
부산 사하구	-	울산 중구	-
부산 서구	-	인천 계양구	추첨
부산 수영구	기준 있음	인천 남동구	추첨
부산 연제구	-	인천 동구	추첨
부산 영도구	-	인천 미추홀구	추첨
부산 중구	-	인천 부평구	추첨
부산 해운대구	-	인천 연수구	추첨
		인천 중구	추첨

## □ 개선방안

- 같은 우선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 계약자 선정기준 마련(대전 대덕구 등 6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계약)** 공공시설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19.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평가대상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각종 민간단체 등에 관한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 현황

- 전국 233개 지자체에서 **9,652건**(광역 1,005건, 기초 8,647건), 약 **5조 4백억 규모 예산**의 민간위탁사업 운영<sup>1)</sup>
  - 민간위탁사업 유형별로 **사회복지분야가 41.5%**(3조3백억), **환경보호 분야 30.6%**(2조24백억), **문화·분야 7.7%**(5천6백억)로 높은 비중 차지<sup>2)</sup>

< 전국 지자체(233개) 민간위탁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사업 총 예산	사업별 평균예산
<b>계</b>	<b>9,652</b>	<b>5,042,669</b>	<b>522</b>
특·광역시	289	213,799	739
도	716	1,106,407	1,545
시	3,161	1,656,963	524
군	2,442	695,486	290
구	3,044	1,342,511	441

-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이에 따라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사무의 민간 위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제정·운영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은 크게 **민간위탁 준비 단계 - 진행단계 - 이후(사후관리)단계**로 구분

1)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2017,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인용. 단 부산, 울산, 충남, 경기도 광주시/양주시, 경북 군위군/영덕군/울릉군, 경남 의령군(총 10개 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현황에서 제외.

2)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2017, 한국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

< 민간위탁 업무 흐름도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점

-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자격과 심의회 구성 등이 중요함에도
  - 대구 동구 등은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이 없거나 낮아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에 공정성·객관성 훼손 우려
  - 인천 동구 등은 위원의 자격요건이 없거나 불명확해 지명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될 우려

- ② 대전 동구 등은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을 정하지 않아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목적 외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
- ③ 지자체장은 당해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 서울 구로구·마포구는 수탁기관 지도·감독(감사)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표 18] 민간위탁 관련 규정 현황

구 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		③ 수탁기관 의무	④ 수탁기관 감사 의무화
	① 외부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② 자격요건 구체화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없음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미흡			
대구 북구	미흡			
대구 서구		미흡		
대구 수성구		미흡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미흡		없음	
대전 서구			없음	
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미흡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	미흡			

구 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		③ 수탁기관 의무	④ 수탁기관 감사 의무화
	① 외부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② 자격요건 구체화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없음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미흡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미흡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임의규정
서울 금천구	미흡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미흡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임의규정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미흡			
서울 성북구	미흡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미흡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구	미흡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미흡			
울산 남구			없음	
울산 중구			없음	

구 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		③ 수탁기관 의무	④ 수탁기관 감사 의무화
	① 외부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② 자격요건 구체화		
인천 계양구	미흡			
인천 남동구	미흡			
인천 동구	미흡	미흡		
인천 미추홀구	미흡		없음	
인천 부평구	미흡	미흡	없음	
인천 연수구	미흡	미흡		
인천 중구	미흡	미흡		

## □ 개선방안

- ① 외부 위촉위원을 2분의 1 이상이 아닌 과반수로 확대(대구 동구 등 21개 자치구)
- ②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인천 동구 등 6개 자치구)
- ③ 위탁 시설, 장비, 비용 등이 위탁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탁 기관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대전 동구 등 8개 자치구)
- ④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감사)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서울 구로구·마포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민간위탁사무 관련 공무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제19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제2항의 외부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0.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평가대상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도시형소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부구청장과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대학교수·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팀장이 된다.

※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없음

###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 현황

- 각 지자체는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고 투자지원, 관련 기금관리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
-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중요시책·기업유치 기본계획,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위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 문제점

- ① 대전 대덕구는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어 위원구성의 신뢰성 훼손 우려
- ② 대전 동구 등은 위촉위원 연임제한을 두지 않아 장기 연임에 따른 친소관계 형성 등 부패 발생 개연성
- ③ 광주 남구, 대전 동구는 안전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부재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심의 공정성 확보 미흡

[표 19]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 관련 위원회 규정 현황

① 비위행위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	대전 대덕구
② 연임제한 필요	대전 대덕구·동구·유성구·중구, 인천 동구
③ 제척·기피·회피 규정 부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동구

## □ 개선방안

- ① 부적격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 마련 (대전 대덕구)

②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명시(대전 동구 등 5개 자치구)

③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광주 남구 등 3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과학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략사업추진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기업유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21. 우수기업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평가대상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우수기업인 표창)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우수한 기업(이 조례에서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수출·생산·매출 분야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 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모범이 되는 업체
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
4. 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조례 운영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홍보, 지원사업 우선 선정, 공영주차장·공무원 휴양소 무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혜택 부여

□ **문제점**

- 광주 광산구 등은 우수기업인 선정기준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

하는 기업인”과 같은 세부기준 없이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특정 기업에 특혜 부여 우려

[표 20]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자치구	선정기준	자치구	선정기준
광주 광산구	미흡	서울 강서구	
광주 남구		서울 관악구	
광주 동구		서울 광진구	
광주 북구		서울 구로구	
광주 서구		서울 금천구	
대구 남구		서울 노원구	
대구 동구	미흡	서울 동대문구	
대구 북구		서울 동작구	
대구 서구		서울 마포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대문구	
대구 중구		서울 서초구	
대전 대덕구	미흡	서울 성동구	
대전 동구	미흡	서울 성북구	
대전 서구	미흡	서울 송파구	
대전 유성구	미흡	서울 양천구	
대전 중구	미흡	서울 영등포구	
부산 강서구		서울 용산구	
부산 금정구		서울 은평구	
부산 남구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		서울 중랑구	미흡
부산 북구		울산 남구	
부산 사상구		울산 중구	미흡
부산 사하구	미흡	인천 계양구	미흡
부산 서구		인천 남동구	
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	미흡
부산 연제구		인천 미추홀구	
부산 영도구		인천 부평구	
부산 중구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중구	
서울 강북구			

## □ 개선방안

-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우수기업인 선정기준 삭제 또는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객관적 세부기준·심의 절차 등 마련 (광주 광산구 등 12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대상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또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 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기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시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같음한다.

#### ■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대상 등)** ① 제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군·충청북도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3.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
4.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 기업지원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22. 지역축제 운영·지원 적정성 제고

평가대상

축제 지원·운영 조례

###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척) 위원회 위원이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제척 미흡, 기피·회피 없음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 평가기준 : 재정 누수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 현황

- 지자체는 지역 문화재, 특산물 등을 소재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축제·행사 개최

〈 전국 축제·행사 개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451	472	520	523	189
총부담액(A)	426,050	437,247	495,205	499,358	154,269
수익(B)	94,875	81,813	61,625	59,438	15,667
수익률(B/A)	22.3%	18.7%	12.4%	11.9%	10.2%

(출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광역 5억, 기초 3억 이상 행사·축제 대상

- 축제·행사 효율 제고를 위해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제 기획·추진·집행, 지원계획 심의·조정, 예산 지원, 평가 등 심의

□ 문제점

- ① 부산 동래구는 임기 중 위원 해촉 규정이 없어 위원구성 시 부적격자 배제가 미흡해 공정성 훼손 우려
- ② 광주 광산구 등은 위원에 대한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소 관계 형성 등 부패 발생 개연성
- ③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 대전 대덕구 등은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고,
  - 대구 남구 등은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부실해 공정성 훼손 우려
- ④ 대구 수성구 등은 축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성과 등 평가 및 결과 반영을 통한 무분별한 축제 및 예산 낭비 방지 곤란

[표 21] 축제 운영·지원 관련 규정 현황

구분	축제위원회			평가
	해촉	임기/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광주 광산구		연임제한 없음		
광주 남구		연임제한 없음		
광주 동구				규정 없음
광주 북구				
광주 서구			기피 미흡, 회피 재량	규정 없음
대구 남구		연임제한 없음	기피 미흡, 회피 재량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규정 없음
대구 수성구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규정 없음	
대전 동구			규정 없음	

구분	축제위원회			평가
	해촉	임기/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대전 서구		연임제한 없음		
대전 유성구		연임제한 없음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기피 미흡, 회피 재량	
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연임제한 없음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연제구			회피 없음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부산 해운대구			규정 없음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연임제한 없음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연임제한 없음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연임제한 없음		
서울 종로구				

구분	축제위원회			평가
	해촉	임기/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서울 중구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서울 중랑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			제척 미흡, 기피·회피 없음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연임제한 없음	기피·회피 없음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연임제한 없음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 언론보도 사례 >**

- ◆ 김○○, “위원회 대쪽 정비... 일회성·선심성 행사 폐지”(22.6.23, KBS)
  - “일회성이거나 선심성인 행사 예산을 확 줄여 복지로 돌리겠다는 방침”
  - “당장, 평창 평화포럼은 재검토,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폐지 대상”
- ◆ 6년간 296억 쓴 ‘무예마스터십’ 사실상 ‘폐지’(22.7.26, 뉴데일리)
  - “도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고 도민의 공감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예마스터십을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 개선방안**

- ①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부산 동래구)
- ② 위촉위원회에 대한 연임 제한 명시(광주 광산구 등 17개 자치구)
- ③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대전 대덕구 등 8개 자치구) 또는 보완(대구 남구 등 6개 자치구)
- ④ 운영성과 등 축제 평가에 관한 규정 마련(대구 수성구 등 4개 자치구)

## [타 기관 우수사례]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5조(축제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축제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축제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평가에 따른 구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축제 평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V.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61개 자치구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조치기한 : '24. 8. 31.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b>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b> <b>([표 1] 참고)</b> ← 밑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①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심의 등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외부전문가 참여 규정 신설	(광주) 남구, 동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부산) 금정구,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 운영기획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부산) 서구
- 재량으로 되어 있는 외부전문가 참여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위원 참여 규정 신설	(부산) 강서구, 동래구 (서울) 종로구
②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보완	
-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	(광주) 남구, 동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 미흡한 제척·회피 규정 보완	(광주) 광산구, 북구(부산) 해운대구 (서울) 서대문구, 성북구 (인천) 계양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③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방지	
-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신설	(부산) 강서구, 금정구, 연제구
-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 마련	(대구) 북구, 서구, 수성구 (대전) 중구, (부산) 동구, 동래구,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또는 재량적 환수를 강행규정으로 개선	북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b>④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b>	
-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홈페이지 등 공개 규정 마련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 모두 공개 하도록 규정 개선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b>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b> (①, ②는 [표 2] 참고, ③~⑦은 [표 3] 참고)	
<b>①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 마련</b>	
- 조례에 징계 규정 마련 * 지방자치법,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열거한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등 위반행위가 징계 대상임을 명시	(대구) 동구 (부산)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영도구 (서울)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 추가	(대구) 남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남구, 동구, 사상구, 사하구, (서울)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b>②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 또는 징계기준 보완(윤리심사 대상유형별 징계기준 추가)</b>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③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서울) 구로구
④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또는 서로 다른 연임제한 규정 정비	(대전) 중구 (서울) 강서구, 중구
⑤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대구) 남구, 동구, 서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⑥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미흡한 규정 보완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⑦ 구 소속 공무원 등의 예외적 참여를 허용한 준용 규정 정비	(서울) 관악구, 영등포구
<b>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b> <span style="float: right;">([표 4] 참고)</span>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강화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서울) 양천구
- 공무국외출장 구체적 심사기준(별표) 마련	(서울) 동작구, 종로구
② 공무국외출장 제한 강화	
- 행안부 표준안에서 정한 출장제한 규정 마련	(서울) 양천구, 종로구
- 행안부 표준안에서 제시한 출장 제한 사유 중 누락 된 사유 추가	(부산) 사상구
③ 국외출장 심사위 구성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을 7인 이상으로 확대	(광주) 서구 (부산) 중구 (서울)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종로구
- 민간위원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 신설 또는 참여 비율이 명확해지도록 보완	(서울) 동작구, 양천구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 모든 민간위원을 외부추천을 받아 위촉 하도록 규정 신설 또는 보완	(서울)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인천) 부평구
- 심사위원인 의원의 본인 출장 심사 배제 명시	(부산) 사상구, (서울) 동작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④ 심사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	(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인천) 미추홀구, 중구
⑤ 회의 운영 공정성·투명성 강화	
-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확대	(부산) 중구 (서울) 양천구
-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부산) 사상구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인천) 부평구
⑥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에 대한 의무적 환수 규정 신설 또는 강행규정으로 개선	(부산) 사상구 (서울) 양천구 (울산) 중구
<b>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b> <span style="float: right;">([표 5] 참고)</span>	
①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마련 *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여비지급 조항 신설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명시 등	(인천) 계양구, 중구
② 근무지 내 출장 시 식비·교통비 지급 규정 삭제	(대구) 동구, (서울)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③ 운임비(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	(서울) 양천구
<b>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b> <span style="float: right;">([표 6] 참고)</span>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접대비 집행기준을 조례에 반영	(대구) 북구, 수성구 (부산) 영도구
② 업무비 사적사용 제한기준 구체적 열거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	(부산) 사상구, 수영구 (서울) 동작구
③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규정(환수, 징계 등) 조례에 반영 또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광주) 광산구, 북구, (대구) 남구, 동구, 수성구, 중구, (부산)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서울) 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인천) 연수구
④ 업무추진비 교육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보완	
-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교육 의무화 신설 또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광주) 북구 (대전) 중구 (부산) 남구,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서울)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인천) 연수구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 사용내역 정기점검 의무화 신설 또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대구) 수성구, 중구 (대전) 중구 (부산)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서울) 강북구, 금천구, 영등포구
<b>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b>	
①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부산) 서구
<b>7.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b> <span style="float: right;">(표 기 참고)</span>	
① 국외출장 사전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선	<p>&lt;집행기관 소속&gt;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p> <p>&lt;의회 소속&gt;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부산) 금정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울산) 남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중구</p>
② 출장결과보고서의 충실성(내용·서식, 표절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lt;집행기관 소속&gt;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p> <p>&lt;의회 소속&gt;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p>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p>③ 부당 지출된 경비의 환수 규정 마련</p>	<p>&lt;집행기관 소속&gt;  (광주) 북구, (대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부산) 사상구, 서구, 해운대구 (서울)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동구, 중구</p> <p>&lt;의회 소속&gt;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송파구 (인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p>
<b>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b> <span style="float: right;">(<a href="#">[표 8] 참고</a>)</span>	
<p>① 국내여비 중 운임비·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하도록 개선</p> <p>*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해당 조문 삭제 또는 영 제8조의2 중 준용이 불필요한 조항만 준용하지 않도록 선별하여 정비</p>	<p>&lt;집행기관 소속&gt;  (대전) 동구 (부산) 금정구, 동구,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p> <p>&lt;의회 소속&gt;  (대전) 동구 (부산) 금정구, 동구, 사상구, 사하구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p>
<p>② 출장비 부정수령 금액의 2배가 아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규정 개선</p>	<p>&lt;집행기관 소속&gt;  (부산) 북구, 사상구 (서울) 은평구 (인천) 동구, 미추홀구</p> <p>&lt;의회 소속&gt;  (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인천) 동구, 연수구</p>
<p>③ 국내 출장비는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개선</p> <p>* 숙박비는 지역별 상한선 설정</p>	<p>&lt;집행기관 소속&gt; (서울) 중구  &lt;의회 소속&gt; (부산) 중구</p>
<b>9. 공용차량 관리 강화</b> <span style="float: right;">(<a href="#">[표 9] 참고</a>)</span>	
<p>① 임차 차량을 차량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p>	<p>(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서울)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p>
<p>②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p>	<p>(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서울)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p>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③ 승용차 간에는 차종(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부산) 수영구 (서울)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랑구 (울산) 중구
④ 공용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광주) 서구 (대구) 남구, 중구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북구, 해운대구 (서울)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울산) 남구, 중구
<b>10.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b> (표 10] 참고)	
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관리자인 과장급 이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 지급 제한 규정 신설</li> <li>*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한하고, 체납액 직접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li> </ul>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울산) 남구 (인천) 계양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직급을 국장급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개선</li> </ul>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부산) 남구, 동구, 동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중구
②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li> </ul>	(부산) 강서구, 동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명시</li> </ul>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③ 포상금 환수 규정 마련 또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지급된 포상금 환수 규정 마련</li> </ul>	(부산) 동구, 사하구, 수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마련</li> </ul>	(부산) 서구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개선	(대전) 중구
<b>11.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b> <span style="float: right;">([표 11] 참고)</span>	
①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보완	<p>&lt;집행기관&gt;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서울) 성북구 (울산) 중구 (인천) 동구, 미추홀구, 중구</p> <p>&lt;의회&gt;  (광주) 남구 (대구) 중구 (대전) 동구 (부산) 동구, 북구 (울산) 남구 (인천) 남동구, 연수구</p>
②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마련	<p>&lt;집행기관&gt;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서울)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p> <p>&lt;의회&gt;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유성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p>
③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	<p>&lt;집행기관&gt;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p>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p>&lt;의회&gt;  <b>(광주)</b>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b>(대구)</b>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b>(대전)</b>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b>(부산)</b>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b>(서울)</b>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b>(울산)</b> 남구, 중구 <b>(인천)</b>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p>
<b>12.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b>	<b>(표 12) 참고</b>
① 연구용역심의위 객관성·공정성 강화	
-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	<b>(광주)</b> 남구 <b>(대구)</b> 남구 <b>(부산)</b> 동래구 <b>(서울)</b> 노원구
- 연임 제한 명시	<b>(광주)</b> 북구 <b>(부산)</b> 사상구 <b>(서울)</b> 영등포구 <b>(인천)</b> 연수구, 중구
-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또는 보완	<b>(광주)</b> 광산구, 남구, 북구 <b>(대구)</b> 남구 <b>(부산)</b> 해운대구 <b>(서울)</b>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b>(울산)</b> 중구
②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재 규정 마련	<b>(광주)</b> 광산구 <b>(대구)</b> 동구, 북구 <b>(부산)</b> 금정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b>(서울)</b>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b>(울산)</b> 남구 <b>(인천)</b>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b>13.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b>	<b>(표 13) 참고</b>
① 금고지정심의위 객관성·공정성 강화	
- 민간전문가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b>(부산)</b> 강서구, 남구, 사상구, 연제구
-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기피·회피 규정 보완	<b>(광주)</b> 남구, 북구 <b>(대구)</b> 중구 <b>(대전)</b> 대덕구, 동구 <b>(부산)</b> 강서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중구 <b>(서울)</b>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b>(울산)</b> 남구, 중구 <b>(인천)</b> 미추홀구
② 금고지정 절차 공개성·투명성 강화	
-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통지를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선	<b>(대구)</b> 동구 <b>(부산)</b>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b>(서울)</b>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 평가기준 등 교부·열람을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선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울산) 중구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③ 협력사업비 공개	
- 협력사업비 공개 규정 마련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으로 편성 시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규정 보완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b>14.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b> <span style="float: right;">(표 14) 참고</span>	
①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제척 규정 신설 또는 제척 기준 보완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금천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중구
- 기피 규정 신설 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대상 위원은 기피 의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개선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대구) 서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금천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연수구, 중구
- 회피 규정 신설 또는 임의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울산) 중구 (인천) 중구
②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③ 위촉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 마련	(대구) 서구, 수성구 (대전) 서구, 유성구 (부산) 사하구, 서구 (서울) 성북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부평구, 중구
<b>15.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b> <span style="float: right;">(표 15) 참고</span>	
① 상위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삭제	(대전)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② 사업비 외에 운영비(사무실 임차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삭제	(대전) 서구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b>16.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b>	
①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등으로 신고기한 확대	(광주) 동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서울)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b>17. 구립 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b> <span style="float: right;">(표 16) 참고</span>	
① 단원 채용 공정성 강화	
- 직책·일반 단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채용규정 신설	(대구) 남구, 서구 (대전) 중구 (부산) 서구 (서울)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울산) 중구 (인천) 미추홀구
- 직책·단원 채용 시 단장 추천방식을 공개전형(모집) 방식으로 개선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울) 중구
- 직책·일반 단원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으로 명확히 명시	(부산)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서울) 동대문구, 은평구 (인천) 계양구
② 운영위원, 전형위원 운영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마련	(광주) 남구, 북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울) 강북구,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종로구
③ 전형위원에 관한 규정 마련	(대구) 남구, 동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동구 (부산)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서울)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b>18.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b> <span style="float: right;">(표 17) 참고</span>	
①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객관적인 계약자 우선 선정기준 마련	(대전) 대덕구 (서울)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b>19. 민간위탁 사업 투명성·책임성 강화</b> <span style="float: right;">(표 18) 참고</span>	
① 위촉위원 구성비율 확대(과반수)	(대구) 동구, 북구 (대전) 동구 (부산) 강서구, 동래구, 수영구, 중구 (서울)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②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대구) 서구, 수성구 (인천) 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③ 시설, 장비, 비용 등이 위탁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수탁기관 통제장치 마련	(광주) 동구 (대전) 동구, 서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④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 지도·감독(감사) 의무화 규정 마련	(서울) 구로구, 마포구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b>20.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b>	<b>(표 19) 참고</b>
① 비위행위를 저지른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대전) 대덕구
② 위촉위원회에 대한 임기 제한 명시	(대전)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인천) 동구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동구
<b>21. 우수기업인 선정기준 명확화</b>	<b>(표 20) 참고</b>
① 지원대상 요건 중 자의적으로 표현한 규정 삭제 또는 객관적 기준·절차 마련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사하구 (서울) 중랑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동구
<b>22. 지역축제 운영·지원 적정성 제고</b>	<b>(표 21) 참고</b>
① 축제위원회 위촉위원 중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부산) 동래구
② 위촉위원회에 대한 연임제한 명시	(광주) 광산구, 남구 (대구) 남구, 수성구 (대전) 서구, 유성구 (부산) 강서구, 동래구, 사하구, 중구 (서울) 노원구, 마포구, 은평구, 중구 (인천) 동구, 부평구, 중구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대전) 대덕구, 동구 (부산) 강서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중구 (울산) 중구 (인천) 동구, 중구
④ 축제 평가에 관한 규정 마련	(광주) 동구, 서구 (대구) 서구, 수성구